

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132-10

www.acrc.go.kr

2016년 고충민원 조정사례집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제도개선

목 차

I . 행정 · 문화 · 교육 분야	1
1. 교량 확장 요구	1
2. 완도 ‘넙고리’ 마을안길 지적공부 정리	5
II . 국방 · 보훈 분야	10
3. 울진 죽변비상활주로 이전 · 폐쇄 요구	10
III . 경찰 분야	15
4. 어린이집 진출입 안전대책 요구	15
5. 남원주IC 교차로 이전중단 및 교통체계 개선대책 추진	20
6. 예술인마을 앞 과속차량 소음 대책 요구	24
7. 성덕철길교차로 교통사고 방지대책 요구	30
8. 마을통과 국도구간 교통안전대책 마련 요구	36
IV . 산업·농림·환경 분야	42
9. 도로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	42
10. 하남수산물상인조합 생계대책 마련	45
11. 시조묘 등 분묘 보존 요구	48
12. 첨단-단양 시외버스노선 조정 및 신설 요구	53
13. 용인, 성북지구 대체도로개설	56
14. 대전 판암 주공아파트 철도소음 저감대책 마련 요구	59
15. 동두천시 지행역 인근 철도소음 저감대책 마련 요구	62

목 차

16. 중금속 오염지역 주민이주 요구	65
17. 산업단지 설계변경 승인 요구	69
18. 대구 ○○아파트 소음저감 요구	72
V. 주택·건축 분야	75
19. 초등학교 인근 건축공사장 어린이 안전대책	75
VI. 도시·수자원 분야	80
20. 완충녹지 일괄보상(부전-마산 복전철 경계) 요구	80
21. 충주댐 조성으로 수몰된 舊단양시가지 하천구역 변경요구	86
22. 하남미사지구 가나안농군학교 건축물 이전 요구	92
23. 하동, 북천천 재해예방대책 수립 요구	97
24. 광교신도시 공영주차장내 택시쉼터 이전 요구	99
25. 나래지하차도 소음저감 대책 수립 요구	103
26. 운유지하차도 소음저감 대책 수립 요구	106
27. 장기지하차도 소음저감 대책 수립 요구	108
28. 광교신도시 내 ○○아파트 부출입구 개설 요구	112
29. 대구 금포지구 하수처리장 무상귀속 요구	114
30. 아산 신리초 이전부지 통학로 안전대책 요구	119
31. 영주댐 수몰 평은리고 대체 교량 신설 요구	124
32. 운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개선 요구	132

목 차

VII. 교통·도로 분야	138
33. 좌회전 허용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138
34. 재해 방지를 위한 철도교 및 하천 교량 확장	141
35. 군산 마을 관통 철도노선 교량화 변경요구	144
36. 고양 다락골 생태도로 · 산책로 복원요구	148
37. 칠곡 공사로 단절된 마을 연결도로 설치요구	152

1. 교량 확장 요구

민원번호 : 2BA-1606-169852 (행정문화교육민원과)

<민원개요>

충남 아산시 선장면 3개 마을에 거주하는 약 300여명의 주민들은 20여 년전부터 대형 차량 및 농기계 등의 통행을 위하여 학성10교(폭5.4m)를 사용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학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신설된 교량의 실제 폭이 4.0m로 설치됨으로써 교량 폭이 좁아 대형차량 및 농기계 등의 진출입이 곤란하니, 차량 등이 교행 가능하도록 교량을 확장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해당 사업의 적기 준공 및 이 민원 마을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농어촌도로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조정·중재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김○○ 외 309명
- 피신청인 : 충청남도지사
- 관련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장

2) 민원주요내용

- 차량 등의 교행을 위한 교량 확장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이 민원 사업(학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시급성
- 교량의 안전성 및 예산 확보의 가능성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학성10교가 신설되면서 대형차량 등의 교행이 불가능
- (충남도) 현재 학성10교의 구조적인 문제(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확장은 불가

- (아산시) 이 민원 사업의 시행청인 피신청인이 변경 또는 추가 신설하는 것이 타당

2) 민원특성 : 집단 고충민원, 소하천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해 소하천 공사 준공·농로 포장 등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5회 : '16. 6 ~ '16. 7.)
-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 보장
- 신청인은 통행 불편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원 해소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예산확보 방안 마련

5. 조정 결과

- (충청남도)
 - 교량(학성10교)의 폭을 5.0m→6.0m(실제 폭 5.0m)로 확장
 - 교량 양측에 강재 난간 설치 및 사업구역 내 연결도로(양측) 폭 확장(현재보다 폭 2.0m이상, 길이 약 30m)
 - 교량(학성10교) 난간 밖으로 1.75m이상 확장보도교 설치 및 교량과 연결도로를 완만한 경사각으로 조정
- (아산시) 교통량의 수요에 따라 농로 확·포장(왕복 2차선)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공공사업의 완공 차질 예상 • 면밀한 검토를 하지 못한 설계로 지역 발전 및 주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집단 고충민원이 발생	• 학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적기 준공 • 교량을 확장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도모, 주민 안전 확보

2) 시사점

-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충청남도에서 예산확보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아산시에서 적극 협력함으로써 민원 해결
- 충청남도는 공공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고, 대형차량 등의 교행이 가능한 교량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통행 안전 확보

로이슈

권익위, 아산 학성천 신설교량 확장 합의점 도출



[로이슈 안형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14일 충남 아산시 선장면사무소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충청남도가 신설 중인 학성천 교량의 폭을 확장해 달라는 주민 300여명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충남 아산시 선장면 신동2리, 선장1리, 대흥3리 주민들은 20여년 전부터 대형차량과 농기계가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는 5.4m 폭(실제 5m)의 교량(학성10교)을 이용해 학성천 건너편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고 시내를 통행해 왔다.

그러던 중 2012년 12월 충청남도가 학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존 노후화된 학성10교를 허물고 새로운 교량을 신설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큰 기대감을 가졌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교량의 폭이 기존 교량의 폭(5.4m)보다 적은 5m로 설계돼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충청남도 등 관계기관에 교량 폭을 확장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2 원도, ‘넙고리’ 마을안길 지적공부 정리 요구

민원번호 : 2AA-1606-431587 (행정문화교육민원과)

<민원개요>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임) 외 24필지(약 1.2km) 일원 현황도로는 자조사업 형태로 형성된 마을안길로, 현재까지 40여 년 동안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지적공부상 도로로 정비가 되지 않아 주민불편 및 개발행위가 어려워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공부상 도로로 지목변경 및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합의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이○○ 외 36명
- 피신청인 : 전라남도 완도군수
- 관련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2) 민원주요내용

- 마을안길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 지적공부상 도로로 지목변경 및 정비 요구
- ※ 이 민원 마을안길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 당시 마을자조사업으로 형성된 비법정 도로로서, 지적 불일치, 경계 및 소유권 분쟁 등 전국적으로 유사민원 발생(법정 도로와 달리 보상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음)

2. 주요 쟁점사항

- 이 민원 마을안길 토지소유자들의 기부채납 및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동의 여부
- 이 민원 마을안길 지적측량 및 도로정비 필요성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마을안길이 공부상 정리가 안되어 지속적 분쟁 초래 및 개발행위 불가

- (완도군) 마을안길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공부상 정비를 위한 예산 필요
- (LX공사) 권익위와 MOU체결 기관으로서, 지적측량 및 측량비 감면 협조

2) 민원특성 : 장기 집단갈등 민원, 토지분야(지적) 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조사, 토지주 및 관계기관(완도군, LX공사) 간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
-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해 토지이동결의, 지적측량 등 지적공부 및 도로 정비를 위한 현장 합의·중재안 도출

2) 갈등해결수단 : 마을이장 및 군관계자를 통한 토지소유자 등 관계자 이해·설득, 제3의 중재안 제시, 상급기관 법령해석 및 판례 제시

5. 조정 결과

- (완도군) 마을안길의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 등 제반절차 이행 및 도로정비
- (LX공사) 현황도로에 대한 지적측량 실시 및 측량비 감면
- (토지주) 지목변경을 위한 토지이동결의서 작성 및 소유권 정리 등 적극 협조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마을안길 관련 마을주민과 토지주 간 지속적이고 다발적인 분쟁 초래 • 토지주의 경우 공부상 도로가 아닌 마을안길에 접해 있어 개발행위 곤란	• 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 공부상 도로 정비 후, 오히려 나머지 지가 상승 및 도로정비로 경제성 및 편의성 증대 • 마을안길 분쟁 해소 등 토지소유자, 지자체, 마을 주민, LX공사 등 관계자 모두 만족도 증가

2) 시사점

- 마을안길은 공부상 도로가 아닌 비법정 도로로, 토지소유자와 마을 주민 간의 토지분쟁 및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송 안내 이외에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어 민원이 지속적이고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 ※ 완도군 약산면 ‘넙고리’ 마을안길 이외에 보길면 등 마을안길과 관련하여 통행 방해, 원상회복 및 토지보상 요구 등 지속적인 지역갈등 및 민원분쟁을 초래
- 토지소유자들의 이해·설득 및 현장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40여 년 간 지속되어 왔던 마을안길(비법정도로) 문제 현장 합의해결
- 전국 첫 모범 해결사례로서 마을안길(비법정도로) 문제와 관련하여 전국 각 지자체에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 제시

전남 완도군 주민의 마을안길 40년 숙원 해소



“권익위, 28일 완도군청에서 현장합의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노해선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8일 11시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현장 조정·합의 회의를 열고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일명 '넙고리') 마을안길의 지적 과 현황의 불일치 문제 해소 및 도로 정비 등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전남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885-3(임)외 24필지(약1.2km 정도)에 걸쳐져 있는 이 도로는 새마을사업 당시 마을 자조사업 형태로 조성된 마을안길로서 지난 40여 년 동안 주민들이 이용해 왔다.

그런데 이 도로가 지적공부상으로는 밭(田), 임야로 되어 있고 해안 등에 위치하여 도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도 공부상 도로로 되어 있는 등 등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아 우편물 수령 불편, 도로훼손 및 방해, 도로관리의 어려움, 소유권 분쟁 등 주민 간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해 왔다.

이에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넙고리”) 마을이장 외 주민 36명은 현황도로와 공부상 도로가 맞지 않아 다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적측량·정비 등 지적불부합 문제해소 및 도로정비 등을 요구하면서 올해 6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28일 11시 전남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주민과 차주경 완도군 부군수, 최종만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사업본부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합의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합의에 따라 ▲ 완도군은 마을안길의 토지이동(도로, 지목변경)을 위한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 등 제반 절차를 자체 비용 부담으로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올해 3월 권익위와의 업무협약(MOU) 및 옴부즈만 운영계획에 따라, 이 민원 현황도로 부분에 대한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측량비의 일부 감면 등 이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신청인들은 이 민원 마을안길의 지적측량 등 공부상 도로로 토지이동(지목변경) 및 소유권 정리를 위한 이 민원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합의는 기관 간 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권익위의 MOU 체결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동 협력은 물론 주민과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피신청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지가 반영되어 지난 40여년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마을안길 분쟁 해결의 첫 모범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며 지역 공동번영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관계기관 등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유사한 민원으로 인한 주민 갈등문제가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해선 기자 noharv@

완도 주민 40년 고질 민원 해소...권익위 합의

【완도=뉴스시스】구길용 기자 = 지적공부상 내용과 실제 도로가 맞지 않아 40년 넘게 전남 완도군 약산면 주민들의 고질 민원이었던 사안이 해소됐다.

전남 완도군은 30일 국민권익위가 최근 현장조정합의회의를 갖고 약산면 우두리 주민들이 제기한 마을안길 집단민원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885-3 등 25필지(1.2km)에 걸쳐있는 이 도로는 지난 1970년대 새마을 사업 당시 비법정도로인 마을안길로 조성됐다.

그러나 이 도로는 지적공부상 밭과 임야로 돼 있고 해안 등에 위치해 도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로관리의 어려움에 따른 원상회복 요구나 소유권 분쟁, 토지보상 등 민원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또 법정도로와 달리 토지보상도 여의치 않았다.

이에 따라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마을이장 등 주민 36명이 지난 6월 지적불부합 해소와 도로정비 등을 요구하면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현장 조정합의회의를 개최한 결과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완도군은 마을안길의 지목변경 등을 위한 지적측량, 지적공부 정리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민원 도로 부분에 대한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측량비의 일부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민원 신청인들도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지난 40여년의 오랜 숙원을 해소했다는 의미와 함께 마을안길 분쟁 해결의 첫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며 "이번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유사한 민원이나 주민 갈등문제가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ykoo1@newsis.com

3. 울진 죽변비상활주로 이전 · 폐쇄요구

민원번호 : 2BA-1512-300682, 2BA-1608-184586(국방보훈민원과)

<민원개요>

경북 울진군 북면에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죽변비상활주로는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충돌 사고가 우려되므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거나, 죽변비상활주로를 이전·폐쇄하여 안전을 보장해 달라

* 5,075명이 제기한 집단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지○○ 외 5,074명
- 피신청인 : 국방부장관, 공군참모총장, 경북 울진군수,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 관련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2) 민원주요내용

- 울진 죽변비상활주로를 이전·폐쇄하여 주민 안전 보장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울진 죽변비상활주로의 이전·폐쇄 가능 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죽변비상활주로 이전 · 폐쇄되어야 함
- (국방부) 죽변비상활주로는 원자력안전에 영향이 없으나, 기부·양여 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이전협약이 가능
- (공군본부) 죽변비상활주로는 군사작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기부·양여 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이전협약이 가능

- (경북 울진군) 죽변비상활주로는 울진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빠른 시일내 폐쇄
- (한국수력원자력(주)) 죽변비상활주로 이전 및 폐쇄를 위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
- (국토교통부) 죽변비상활주로의 이전·폐쇄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간 상호 협조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정상 운영을 위해 죽변비상활주로의 이전·폐쇄 검토 필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죽변비상활주로의 이전·폐쇄는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향상

2) 민원특성 : 안전관련 민원, 집단민원, 국방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해 군사시설 이전·대체시설 제공 등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 및 주민협의(6회), 관계기관 협의(17회)
- 주민들과 원전건설·운영을 위한 안전보장과 군(軍)의 군사시설 사용여건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협의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국방부, 공군본부) 죽변비상활주로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제공될 경우 이전·폐쇄에 동의
-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주)) 2017. 2. 1까지 죽변비상활주로의 이전·폐쇄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
- (국방부, 공군본부, 국토교통부,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주))
협의체는 2018. 1. 31까지 각 기관별 역할분담 등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결정·추진 (협의 : 정기 월1회, 비정기 : 필요시)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주민 안전 불감증 증가 • 집단 공공갈등민원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 • 원자력발전소건설 중단으로 인한 전력 수급계획 차질 우려 • 군(軍) 작전수행여건 불비	• 주민 안전 불감증 해소 •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집단(공공) 갈등민원을 사전 예방 • 원자력발전소건설이 가능하고 운영 및 안전 보장 • 군(軍) 작전수행여건 보장

2) 시사점

- 약 12개월 동안 6차례의 현장조사와 17차례의 관계기관 협의 노력이 있었으며, 국방부, 공군본부,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모두가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위해 소통하여 집단민원 해결

울진군 죽변비상활주로 이전·폐쇄 '가시화'



【울진=뉴스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울진군 죽변비상활주로가 이전·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21일 오후 공군회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주재로 열린 죽변비상활주로 이전·폐쇄 관련 조정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울진군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죽변비상활주로가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충돌 사고가 우려된다"며 "죽변비상활주로를 이전·폐쇄해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조정회의에는 신청인 대표와 피신청인으로 국방부와 공군,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주), 관계기관으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석했다.

국방부장관과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조정회의에서 죽변비상활주로 이전·폐쇄에 동의했다.

이에 울진군수와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은 국방부장관과 공군참모총장,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오는 2017년 2월1일까지 죽변비상활주로의 이전·폐쇄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오는 2018년 1월31일까지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과 제반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

임광원 군수는 "이번 조정회의를 통해 협의체가 구성돼 죽변비상활주로 폐쇄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 폐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r.kang@newsis.com

조정서 들어 보이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다섯번째)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울진 죽변비상할주로 이전 또는 폐쇄 요구 집단 고충민원 조정회의'를 마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6.12.21 [국민권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끝)

4. 어린이집 진출입 안전대책 요구

민원번호 : 2AA-1508-054854 (경찰민원과)

<민원개요>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해 2016년도에 현황도로(80m) 정비 및 교통안전 시설(주차금지구역 지정 등) 설치하도록 조정·중재

*교통안전 관련 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어린이집 원장 유○○
- 피신청인 : 부산진구청장, 부산진경찰서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2) 민원주요내용

- 어린이집 아동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안전대책 마련

2. 주요 쟁점사항

-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 토지의 정비가 가능한지 여부
- 도로 정비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비용부담 기관 및 기관별 협조 사항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어린이집 아동의 통학 안전을 위해 관련시설의 조속한 개선 필요
- (부산진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후 도로정비 및 시설개선 가능

-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대책 마련은 도로개설 및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후 가능
-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사용 승낙은 원칙적으로 대부계약을 전제로 허용,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 부득이한 경우 현황도로 개선은 가능

2) 민원특성 : 교통안전 민원, 경찰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을 분담(조정)하여 토지사용 허용, 도로정비 및 교통안전시설 비용 부담, 관련 협조 등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2회 : '15. 9.11, 12.10), 관계기관 협의('15. 12. 30)
- 현장조사 시 관계기관 책임자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 및 애로사항 공감

【 고충민원 조정 추진 관련 주요 경과 】

- 피신청인들에게 제기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추가민원 신청 (2015. 8. 5.)
- 관계기관(구청, 경찰서, 캠프) 담당관 동행하여 현장의 문제점 확인(9. 11.)
- 민원해결방안 마련 및 검토요청(9. 15.)
 - ▶ 민원 문제점을 합의·조정으로 해결하는 데에 대한 공감대 형성
 - ▶ 피신청인 의견서 제출(10.15.)
- 조정서 사전검토 요청(11. 11.), 피신청인들 검토의견 제출(12. 2.)
 - ▶ 토지사용승락 등 합의 어려운 점 파악
- 조정서(안) 검토회의(12. 10.)
 - ▶ 조정서(안)에 대한 기관의견 수렴 확인(12. 28.)

2) 갈등해결수단 : 개선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 기관 간 협업 필요성 이해·설득

5. 조정 결과(내용)

- (부산진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현황도로 정비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 (부산진경찰서) 부산진구의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협력
- (한국자산관리공사) 현황도로 상에 어린이들 통행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조치 인정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어린이집 통학아동이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 • 여러 기관이 협업으로 해결할 민원사항을 기관 간 이송 미처리(속칭 ‘핑퐁’)민원으로 취급하여, 정부에 대한 불신 심화	• 어린이집 통학아동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교통안전 확보 • 기관 간 소통·협업으로, 아동들 통학로 안전대책 추진

2) 시사점

- 기관 간 소통·협업을 통해, 어린이집 아동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통학로 안전대책 추진
- 신청인이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출하여도, 다른 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이라며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던 문제에 대해, 기관 간 협력하여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

권익위, 어린이집 아동 등·하원 길 민원 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산진구 전포보람어린이집 아동들의 등·하원 길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9일 오후 2시 부산진구청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부산진구, 부산진경찰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 등이 참석, 권익위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부산진구 전포보람어린이집 아동들의 등·하원 길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의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전포보람어린이집 아동들이 등·하원하는 도로중 약 80m 구간은 일부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다.

하지만 노면이 패인 곳이 많고 차량들이 상시 무질서하게 주·정차돼 있어 아동들의 통행 안전이 크게 위협받았다.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들은 아동의 안전한 등·하원 길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관할 지자체에 지속 요청했으나 관계기관 관 의견 조율이 안돼 결국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민원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2시 부산진구청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부산진구, 부산진경찰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부산진구는 2016년도에 국유재산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협의, 기존 콘크리트 도로를 재포장하고 부산진경찰서 소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 주·정차 금지선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유지인 현황도로 부지 상 아동들의 등·하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도로공사가 가능하도록 승낙하고 부산진경찰서는 부산진구가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어린이집 등·하원 길 안전대책이 완료되면 어린이집 통학아동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이라며 “기관 간 소통·협력하는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어린이집 아동들의 통학로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박희송 기자 heesking@daum.net

국민신문 **NEWSis.** / 국내 최대
인명 뉴스통신사
2001-2011

국민권익위원회 부산 현장조정회의



【서울=뉴스시스】국민권익위원회 박창수 상임위원이 29일 오후 부산진구청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어린이집 아동 등하원 길의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해결한 후 관계자, 학부모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16.01.29.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5. 남원주IC교차로 이전중단 및 교통체계 개선대책 추진

민원번호 : 2BA-1411-225197 (경찰민원과)

<민원개요>

남원주IC 교차로 이전·신설 추진시, 기존 교차로 주변을 생계기반으로 하는 주민들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니, 기존 교차로를 존치하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해 교차로의 기존위치를 존치한 상태에서 교통체계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향후 교차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라도 신청인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현장 합의

*집단 민원(100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지역주민 이○○ 외 99명
- 피신청인 : 강원도 원주시장
- 관련기관 : 원주경찰서장,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장

2) 민원주요내용

- 남원주IC 교차로를 이전하면 기존 교차로 주변 주민의 생계에 위협이 되므로 기존 위치에 존치할 것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피신청인의 교차로 이전 사업(정책)이 적절한지 여부
- 신청인들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교통체계에 악영향을 끼칠지 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기존 교차로를 이전하여도 교통안전 개선이 미미하고, 주민생계만 위협

- (원주시) 교차로 이전은 통행 교통량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임
- (원주경찰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발생 증가는 미미한 실정임

2) 민원특성 : 교통안전 민원, 경찰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고충민원 해결 현장합의안 도출
- 현장조사(2회 : '15. 1.29, 3.19), 관계기관 협의(2회 '15. 2.17, 4.7)
- 피신청인 교차로 이전 철회 의견제출('15. 12.11)
- 신청인들 생업에 지장 없도록 교차로 존치 및 이전 시 주민의견수렴 등 대책 마련

【 고충민원 합의 추진 관련 주요 경과 】

- 남원주IC교차로 이전중단 요구 집단민원(100인 대표 이○○) 접수(2014. 11. 20.)
- 관계기관(원주시, 원주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담당관 현장회의(2015. 1.29.)
- 민원해결방안 마련 및 검토요청(2015. 2. 17.)
 - 관계기관이 개선방안을 합의·조정으로 해결하는 방안 공감
 - 의견서 제출 : 원주경찰서(2.27.), 도로교통공단(3.3.), 원주시(3.4.)
- 신청인과 관계기관 참석, 조정회의 등 추진을 위한 조정서(안) 검토(2015. 3. 19.)
 - 신청인등 조정서(안)에 대한 합의 거부, 새로운 방안 마련 요구
 - 조정서(안) 검토회의 결과를 반영, 피신청인(원주시)에 대안마련 요구(2015. 4. 7.)
 - 원주시가 용역시행 및 한국도로공사 남원주IC 기술검토 등을 사유로 개선안 제출 지연
- 원주시가 남원주IC교차로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제출(2015. 12. 11.)
- 합의서(안) 작성 및 검토요구(2015. 12. 16.)
 - 합의서 동의 : 원주경찰서(12.18.), 도로교통공단(12. 23.), 원주시(12. 28.)
- 고충처리국장 주재 협장합의(2016. 2. 2.)
 - 신청인대표 이윤섭, 피신청인(원주시장), 관계기관(원주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참석
 - 현장 방문 및 합의회의를 통해 합의서의 개선방안에 참석자 전원 동의

2) 갈등해결수단 :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관계기관(강원도,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검토

5. 조정 결과

- (원주시) 남원주IC교차로의 기존위치를 존치한 상태에서 교통체계 개선대책을 추진, 향후 교차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신청인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 (원주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 피신청인이 교통체계 안전 및 소통 대책 수립과 관련 기술적·행정적 지원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피신청인의 정책(교차로 이전)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미흡 • 교차로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의 집단 민원 발생	• 교차로 이전에 따른 효과가 미미함을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 등 검토 확인 • 피신청인 및 신청인들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철차적 합의 ※ 당해 민원 이외에 추후 예상 문제도 대응

2) 시사점

- 피신청인은 당초 집단민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관계기관 의견 등을 검토하면서 적극적으로 민원해결 의사결정
- 교차로 이전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검토 이외에도 실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

□ 고충민원 현장현황



□ 현장 조정 · 합의회의 결과



6. 예술인마을 앞 과속차량 소음 대책 요구

민원번호 : 2BA-1512-090699 (경찰민원과)

<민원개요>

전북 완주군 소재 예술인 마을 앞 국도 상 과속차량으로 인한 소음피해 대책으로 과속 단속장비를 설치하거나, 방음벽을 설치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해 소음피해의 발생을 확인하였기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제한속도 표시 안전시설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

*지역현안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마을주민 대표 김○○ 외 22명
- 피신청인 :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완주경찰서장, 완주군수

2) 민원주요내용

- 마을 앞 국도의 과속차량으로 인한 소음에 대해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 또는 방음벽 설치 등의 방법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이 민원 요구의 타당성(소음이 환경 기준치를 상회하여 개선할 필요성) 여부
- 개선필요 시 과속단속장비 운용 또는 방음벽 설치 중 어느 기법을 적용할지 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과속단속장비 또는 방음벽 설치를 통해 차량소음 저감 요구
- (국토관리사무소) 국도27호선 개통(2005년) 이후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13,662대/일)하여 소음(주간65.9dB, 야간55.5dB)이 환경기준치를 초과, 방음벽 설치 필요

- (경찰서) 과속단속장비는 교통안전을 주목적으로 하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소음피해 대책으로 설치하기에는 부적합

2) 민원특성 : 환경(도로소음) 민원, 경찰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 방음벽 설치·교통 안전시설 설치 등 조정·중재안 도출
-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신청 민원과 관련 소음문제 분석('16. 1.27)
-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방음벽 설치, 경찰서에서 제한속도 안내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협의

【 고충민원 조정 추진 관련 주요 경과 】

- 고충민원 신청 (2015. 12. 8.)
- 관계기관(전주국토관리사무소, 전북지방경찰청, 완주군) 문제점 검토
 - ▶ 과속단속장비 설치는 적합하지 않음(전북지방경찰청, 2015. 12. 16.)
 - ▶ 소음측정결과에 따라 대책마련(전주국토관리사무소, 2015. 12. 23.)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소음측정 결과 보고서' 제출(2016. 1. 27.)
 - ▶ 주간 및 야간 소음환경기준치를 상회하는 도로교통소음 측정
 - ▶ 방음벽(소리 흡수) 설치 등 대책마련 필요성 검토
- 관계기관 조정서(안) 검토 요청(2016. 2. 23.)
 - ▶ 조정서(안)에 대한 기관의견 수렴 확인(2016. 3. 7.)

2) 갈등해결수단 : 피신청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2017년까지 신청인 거주지의 도로교통소음이 소음환경기준치 이하로 줄어들도록 방음벽(소리 흡수)을 설치
- (완주경찰서) 2016년 중에 민원 도로구간의 제한속도 등을 표시하는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검토하여 추진
- (완주군) 이 민원 개선과 관련된 제반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도로변 소음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피해 지속 예상 - 소음피해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 및 주민 고충 발생	- 교통량 증가 등 도로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소음피해가 증가하는 문제 개선 - 이 민원을 계기로 지역 주민의 소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2) 시사점

-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인의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서,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민원을 해결
- 도로관리청은 방음시설을 설치, 일선 경찰관서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함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국제뉴스

국민권익위원회, 교통소음 피해대책 마련

전북 완주군 구이면 예술인마을 앞 국도 방음벽, 제한속도 표지판 등 설치

노충근 기자 n-chg@hanmail.net



(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북 완주군 구이면 예술인마을 앞 국도를 지나는 과속차량 때문에 교통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18일 권익위에 따르면 예술인마을 앞 국도27호선(전주~순천 구간)은 편도 2차선으로 지난 2005년 개통 이후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해 현재 일일 평균 1만3662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또 주민들은 통행차량의 과속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문제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제기했으나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고도 소음피해가 줄지 않으면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관계기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18일 오전 11시 완주군 구이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완주군수, 완주경찰서장, 전주국토관리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합의안에 전주국토관리사업소는 2017년까지 마을 앞 국도의 교통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방음벽을 설치하고 완주경찰서는 2016년에 국도 상 제한속도(시속 80km) 노면표시 및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의 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고 고충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완주 예술인 마을 교통소음 대책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140세대, 333명이 거주하고 있는 전북 완주군 구이면 예술인마을 앞 국도를 지나는 과속차량 때문에 교통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중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140세대, 333명이 거주하고 있는 전북 완주군 구이면 예술인마을 앞 국도를 지나는 과속차량 때문에 교통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중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예술인마을 앞을 지나는 국도27호선(전주~순천 구간)은 편도 2차선으로, 지난 2005년 개통 이후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해 현재 일일 평균 1만3662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통행차량의 과속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문제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제기했으나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고도 소음피해가 줄지 않으면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의 소음측정 결과, 주간 65.9dB, 야간 55.5dB로 나타나 소음환경 기준치(주간 65dB, 야간 55dB)를 초과하고 있다.

한편 완주경찰서는 과속단속장비의 설치 목적은 교통사고 예방에 있기 때문에 해당 도로구간의 교통사고 현황 등을 감안 시 단속장비의 설치는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거쳐 이날 오전 11시 완주군 구이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완주군수, 완주경찰서장, 전주국토관리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전주국토관리사업소는 2017년까지 마을 앞 국도의 교통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완주경찰서는 2016년에 국도 상 제한속도(시속 80km) 노면표시·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의 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고 고충을 해소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박희송 기자 heesking@daum.net

7. 성덕철길교차로 교통사고 방지대책 요구

민원번호 : 2BA-1603-161232 (경찰민원과)

<민원개요>

강원도 강릉시 소재 성덕철길교차로는 기형적인 형태로 인해 운전자들이 진행방향에 혼돈을 초래하여 역주행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교통사고 방지대책을 세워 달라는 민원에 대해, 원주~강릉복선전철공사를 '16년 말까지 완료하고,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교통사고 방지대책(회전교차로 건설)을 추진하도록 조정·중재

* 기획조사 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강○○
- 피신청인 : 강원도 강릉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관련기관 : 강릉경찰서장

2) 민원주요내용

-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덕철길교차로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성덕철길교차로의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
- 교차로개선 방안 검토, 기관별 개선방안의 추진의 적절성 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교차로가 기형적이어서, 역주행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등 개선 필요

- (강릉시장) 도로교통공단의 전문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회전교차로 설치를 추진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원주-강릉 복선전철공사를 2016년 말까지 완료
- (강릉경찰서장) 최근 5년간 교통사고 50건, 부상 92명으로 교통사고 방지대책이 필요

2) 민원특성 : 교통안전 민원, 경찰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해 교통안전 시설 대책 등 조정·중재안 도출
- 경찰관서 및 지자체 대상 개선필요 민원유발 지점(강원권)에 대한 실태파악(2016. 1월)
- 신청민원 등 41개 개선과제에 대해 도로교통공단(강원지부) 검토(2016. 1. ~ 4.)
- 성덕철길교차로 개선요구 민원 접수(2016. 3. 14)
- 고충민원 현장조정(2016. 6. 2)

2) 갈등해결수단 : 민원발생 문제지점 사전 파악, 이해·설득, 관계기관 협업 대응

5. 조정 결과

- (한국철도시설공단) 원주~강릉복선전철공사를 '16년 11월말까지 완료
- (강릉시) 전철공사 완료 후, 회전교차로 건설 등 교통사고 방지대책 추진
- (강릉경찰서) 이 민원 사업과 관련된 제반 행정적·기술적 지원 등 협력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철도로 인해 도로선형의 기형적 운영 • 교통사고 빈발(5년간 50건, 92명 부상)로 사회경제적 손실 심각, 주민 집단고충 발생	• 간선 철도망 구축과 병행, 도로선형 및 교차로 체계를 안전하게 개선 • 교통사고에 대한 근원적 대책 마련을 통해 사회비용 절감 및 고충 해소

2) 시사점

- 간선 교통시설인 철도와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철도 선형 등에 따라 기형적 도로 교차지점이 형성되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구조적 개선이 어려운 문제점 발생 우려
- 고충민원이 발생되기 전 기획조사를 실시, 선제적으로 지자체 및 경찰관서를 통해 우선 개선필요 지점을 파악하고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개선대책 마련
- 도로관리청인 강릉시와 철도건설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도로와 철도에 대한 시설 개선 일정 등을 감안하여 개선대책 추진 일정을 협의조정

강릉 성덕철교 교차로 입체교차로로 바뀐다

[서울신문]

최근 5년간 50건의 역주행 교통사고로 9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강원 강릉시 성덕철길 교차로가 연말까지 입체교차로로 바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교통안전시설 관련 집단민원 발생지 점에 대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 교차로의 문제점을 찾아내 도로교통공단, 강릉시, 한국철도시설공단, 강릉경찰서 등과 공동으로 교통안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성덕철길 교차로는 도로 폭이 좁아 200여m 구간이 일방통행로로 운영돼왔다. 이로 인해 교차로가 기형적으로 형성되면서 강릉시 입암동에서 정동진 방향으로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혼동해 역주행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조모(71)씨와 홍모(34)씨 등이 일방통행로를 잘못 알고 역주행하다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등 이 교차로에서 최근 5년간 50건의 교통사고로 92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대부분의 사고가 관광을 위해 강릉을 찾은 외국인들이 교차로의 형태를 잘 몰라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발생하는 경우로 보고 있다.

권익위는 이날 강릉시청 소회의실에서 마을주민, 강릉시, 한국철도시설공단, 강릉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기형적인 교차로 형태로 인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강릉시 성덕동 성덕철길교차로를 입체교차로 2곳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가 중재한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건설 중인 원주~강릉 복선전철공사를 오는 11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으며 ▲강릉시는 이 공사가 끝나는 시점부터 회전교차로 공사(유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포함)를 실시해 오는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강릉경찰서는 회전교차로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교통안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덕현 권익위 과장은 “오늘 조정은 기관 간 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 방향에 따라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교통안전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강릉 조한중 기자 bell21@seoul.co.kr

역주행 사고 줄어든다?...강릉 성덕 철길교차로 개선

국민권익위 개선책 마련...회전교차로 설치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최근 5년간 50건의 역주행 교통사고로 9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강원 강릉시 성덕 철길교차로가 연말까지 입체(회전)교차로로 바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교통안전시설 관련 집단민원 발생지점에 대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성덕 철길교차로의 문제점을 발굴해 도로교통공단, 강릉시, 한국철도시설공단, 강릉경찰서 등과 공동으로 교통안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교차로는 도로 폭이 좁아 200여m 구간이 일방통행로로 운영됐다.

이로 말미암아 교차로가 기형적으로 형성되면서 강릉시 입암동에서 정동진 방향으로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혼동해 역주행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실제로 작년 여름 조모(71) 씨와 홍모(34) 씨 등이 일방통행로를 잘못 알고 역주행하다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등 최근 5년간 50건의 교통사고로 92명이 부상했다.

이곳 사고의 대부분은 관광을 위해 강릉을 찾은 외지인이 교차로 형태를 잘 몰라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발생했다.

권익위는 2일 강릉시청에서 마을주민, 강릉시, 한국철도시설공단, 강릉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이곳에 입체교차로 2개소를 만들어 도로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권익위 중재를 통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건설 중인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를 11월 말까지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강릉시는 공사가 끝나는 시점부터 회전교차로 공사를 해 12월 말까지 마치기로 했다.

강릉경찰서는 회전교차로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교통안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조정은 기관 간 긴밀히 협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교통안전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yoo21@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yoo21/>

[강릉]성덕 철길 교차로 입체 교차로로 바뀐다



[강릉]성덕 철길 교차로 입체 교차로로 바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성영훈)는 2일 강릉시청 소회의실에서 강릉시, 한국철도시설공단, 강릉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강릉=임재혁기자
역주행사고 5년간 50건 발생

국민권익위 등 개선책 마련

【강릉】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성영훈)는 성덕 철길 교차로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강릉시, 한국철도시설공단, 강릉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성덕철길 교차로는 그동안 도로 폭이 좁아 200여m 구간이 일방통행로로 운영돼 교차로가 기형적으로 형성됐다. 이로 인해 강릉시 입암동에서 정동진 방향으로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혼동해 최근 5년간 50건의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다.

권익위는 이날 강릉시청 소회의실에서 주민, 강릉시, 한국철도시설공단, 강릉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성덕 철길 교차로를 입체 교차로 2곳으로 개선하도록 조정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건설 중인 원주~강릉 복선전철공사를 오는 11월 말까지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또 시는 복선전철 공사가 끝나는 시점부터 회전교차로 공사(유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포함)를 실시해 올해 12월 말까지 입체 교차로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강릉경찰서는 회전교차로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교통안전 등을 지원한다.

임재혁기자 jaehyek@kwnews.co.kr

8. 마을통과 국도구간 교통안전대책 마련 요구

민원번호 : 2BA-1605-069465 (경찰민원과)

<민원개요>

신청인은 춘천시 서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2016. 1. 28. 안보1리 마을주민인 할머니가 경춘국도(국도 46호선) 안보1리 구간 횡단보도(약 10년 전 이 할머니의 손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장소와 동일한 장소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46번 국도(안보리~당림리) 구간은 약 20여 년간 주민 20여명이나 목숨을 잃거나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과속카메라 및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등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토록 조정·중재

*집단 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강원도 춘천시 서면 주민 747명(대표 안보1리 마을이장 손○○)
- 피신청인 : 강원도 춘천시장,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춘천경찰서장
- 관련기관 :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장

2) 민원주요내용

- 국도46호선 마을통과 구간(춘천시 서면 소재)에서 교통사고가 빈발(최근 5년간 총 74건, 사망 6명, 부상 136명 발생)하니 교통안전대책 마련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사망사고 발생 구간의 횡단보도(보행자신호등) 및 차량신호기의 이설 가능성
- 마을회관 입구 앞 좌회전 교통신호기 설치 가능성
- 마을통과 구간 주민보호구역(빌리지존) 설정 및 무인단속카메라 추가설치 가능성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교통사고 빈발 때문에 조속한 교통안전대책 마련이 필요
- (춘천시) 사고발생 후 일부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투광등 추가설치,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가로등 위치조정이 필요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마을통과구간 빌리지존 지정 및 이면도로 폭원정비·가로등 신규설치 필요, 버스승강장 주변 보도정비 및 방호울타리 설치 필요
- (춘천경찰서) 안보리 사고지점 무인과속방지카메라 신규설치 추진, 덕두원 U턴구간 단속장비 설치는 2017년 사업으로 검토

2) 민원특성 : 교통안전민원, 경찰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으로 교통안전대책 마련 등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 및 주민협의(2회), 관계기관 협의 3회
- 지역주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시설 개선 등 조정방안에 합의

2) 갈등해결수단 : 전문기관 기술검토 의견을 통한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춘천시청) 사고지점 교통신호기를 마을입구 쪽으로 이설, 마을입구에서 춘천방향으로 좌회전할 수 있게 신규 교통신호기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 설치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차량 속도제한을 위한 주민보호구역 지정, 마을입구 및 인근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버스승강장까지 보도정비 및 방호울타리 설치, 이면도로 정비
- (춘천경찰서) 마을입구 및 인근 교차로에 무인과속방지카메라 추가 설치
-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교통안전대책 수립·추진 시 기술적 지원 적극 제공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지역주민 교통사고 사상자 빈발 - 소극적인 민원대응으로 인해 대정부 불신 심화	-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 적극적 민원대응으로 정부신뢰 향상

2) 시사점

- 각 기관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던 교통사고 빈발지역 주민에 대해 기관 간 협업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 지역주민 집단민원 해소, 국민의 대정부 A/S 기관으로 위원회 역할 정립

"마의 도로' 시설개선에 10년...하늘에 계신 분들 평안하길"



도로에서 고인 낮 위로하는 주민들 2006년 2월 27일 강원도 춘천시 서면 안보1리 주민들이 마을 앞 경춘국도 변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주민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천도제를 지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죽음의 도로'로 불린 '춘천 서면 경춘국도' 마침내 시설 개선

10년 넘는 안전대책 민원...국민권익위가 현장조정회의로 합의 도출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도로시설 개선에 꼬박 10년이 걸렸네요. 진작에 개선됐다면 사상자가 나지 않았을 텐데...이제는 하늘에 계신 분들도 자손이나 지역주민들을 평안하게 바라보실 거라 믿습니다."

강원 춘천시 서면 안보1리 손창구 이장은 6일 그동안 교통사고로 숨진 주민들을 기억하며 어렵게 말을 뗐다.

작은 교통사고로 주민들 사이에서 '마(魔)의 도로', '죽음의 도로'로 불린 강원 춘천시 서면을 통과하는 경춘국도(국도 46호선).

1990년 경춘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고 나서 21명이 숨졌고 다친 사람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사고가 잦았다.

지난 1월에는 새벽 첫차를 타고 장을 보러 가고자 도로변 인근에 있는 집을 나선 조모(78) 할머니가 횡단보도 걸반을 지나가기도 전에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도로에서 고인 낮 위로하는 주민들 2006년 2월 27일 강원도 춘천시 서면 안보1리 주민들이 마을 앞 경춘국도 변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주민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천도제를 지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조 할머니는 10년 전 같은 곳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손자 남모(13) 군을 교통사고로 잃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2006년 남 군이 숨지고 나서 안보1리 주민들은 경춘국도 변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주민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천도제를 지냈다.

천도제를 마친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호소문을 보내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마을 70가구 중 한 집 건너 한 집이 사고가 난 셈이었을 정도였기에 주민들은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경춘국도 길을 막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으나 반응은 싸늘했다.

춘천시청, 춘천경찰서,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등 당시 민원이란 민원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없었지만,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았다. "검토해보겠다"는 대답이 전부였다.

10년 넘게 관계기관에 안전대책 민원을 제기하는 사이에도 도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주민 수는 늘어났지만, 당국은 묵묵부답이었다.

각 기관은 책임 떠넘기기를 하며 주민들 요구를 외면했다.

참담한 심정을 느낀 주민들이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국민권익위원회다.



물에 잠긴 경춘국도[연합뉴스 자료 사진]

주민 747명은 지난 5월 "지난 20년간 교통사고로 주민 20여 명이 목숨을 잃어 관계기관에 수차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요구했으나 미온적인 대처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출했다.

시속 80km인 제한속도를 60km로 낮추고, 과속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와 마을회관 앞 좌회전 신설 등 8개 항에 대해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손창구 이장은 "10년이 넘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어느 기관 하나 우리 목소리에 대답하지 않았다. 정말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넣었다"고 집단 민원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년간 허공에서 사라진 주민들의 외침에 귀 기울였다.

일주일이 마다하고 손창구 이장과 통화하며 애로점, 문제점, 요구사항의 보편타당성을 검토하고, 마을주민들과 관계기관의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했다.

조덕현 권익위 경찰민원과장은 "직접 가서 보니 한눈에 봐도 과속차량이 너무 많아 주민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돼있었고 실제 피해 상황도 심각했다. 도로 관련한 기관이 여러 곳이다 보니 서로 '핑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도로교통공단 기술검토를 거쳐 이날 춘천시,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춘천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 등과 함께 조정회를 해 합의를 끌어냈다.

교통신호기 위치 조정, 보행자 신호등 설치, 제한속도 시속 60km 제한, 보행안전시설물 설치 등 주민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됐다.

손창구 이장은 "주민들의 '숙원고충민원'이 10년 만에 해결된 것에 이장으로서 정말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권익위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예산문제가 잘 해결돼서 하루빨리 도로 시설이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권익위, 현장조정회의서 경춘국도 사고 다발지역 도로개선 합의 도출

최근 5년간 74건의 교통사고로 6명이 숨지고, 136명이 부상을 입어 개선요구가 높았던 강원 춘천시 서면 경춘국도(국도 46호선) 도로시설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6일 춘천시 서면 안보1리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과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마을 통과 국도 구간의 주민 교통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국도 46호선 가운데 춘천 서면 안보리에서 당림리(강촌삼거리~춘성대교 중간지점) 구간은 왕복 4차로에 하루 평균 교통량이 1만 7000대가 넘는다. 하지만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하고 운전자들의 잦은 과속과 신호위반, 안전의무 불이행 등으로 최근 5년간 교통사고 74건에 사망 6명, 부상 136명이 발생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마을 주민 747명은 지난 5월 “지난 20년간 교통사고로 주민 20여명이 목숨을 잃어서 관계기관에 수차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요구했으나 미온적인 대처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현재 시속 80km인 제한속도를 60km 이하로 낮추고, 과속단속 카메라 추가설치 및 마을회관 앞 좌회전 신설 등 8개 항목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권익위에 제출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6일 사고다발구간인 강원도 춘천 서면 당림리를 찾아 마을 주민과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있다.
국민권익위 제공

권익위는 민원접수 후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도로교통공단의 기술검토를 거쳐 이날 춘천시, 홍천국도관리사무소, 춘천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박창수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회의에서 춘천시는 버스승강장 주변 교통신호기를 안보1리 마을회관 입구 쪽으로 옮기고, 마을입구에서 춘천 방향으로 좌회전할 수 있게 신규 교통신호기와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홍천국도관리사무소는 마을 통과구간의 차량 속도를 현재 80km에서 60km로 제한할 수 있도록 벌리지론사업을 추진하고, 안보1리 마을회관 입구와 경춘공원 교차로 쪽에 횡단보도 설치, 횡단보도에서 버스승강장까지 보도정비 및 방호울타리 설치,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춘천경찰서는 해당 구간에 무인 과속방지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고,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는 관계기관들이 교통안전대책을 원활하게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덕현 권익위 과장은 “기관 간 소통·협력하는 정부의 3·0 정책 방향에 따라 주민 불편과 안전에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관계기관의 의지가 잘 정리돼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국도구간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춘천시 서면 마을통과 국도구간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 및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중 기자 bell21@seoul.co.kr

9. 도로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

민원번호 : 2AA-1410-353384 (산업농림환경민원과)

<민원개요>

(주)○○이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에 분양받은 부지가 협소하게 나뉘어져 계열사간 공동활용의 어려움이 있어 부지 내 도로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해 기업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조정·중재

*기업 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주)○○교육 대표이사 오○○
- 피신청인 : 파주시장, 한국산업단지공단
- 관련기관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2) 민원주요내용

- 분양받은 산업단지 부지에 대하여 인접한 공공지원용지와 교환해주거나 부지 내 도로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

2. 주요 쟁점사항

- 관련기관의 동의 및 국토해양부 고시 등 관계기관이 협의가 필요함
- 기업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안 마련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공공지원용지와 교환해주거나 부지 내 도로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

- (과주시) 관련기관의 동의 및 국토해양부 고시 등 관계기관이 협의가 필요함
- (한국산업단지공단) 공공지원용지와 교환은 어렵지만, 부지의 용도변경은 검토가능
- (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조합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여 동의 여부를 판단

2) 민원특성 : 기업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해 해결방안에 대한 조정·중재안 도출
- 신청인의 의견에 대한 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등 이해관계인과 조정방안 협의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5회)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조합 건축심의위원회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이 민원 부지 사용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
- (과주시)
신청인의 위 사업제안에 대하여 관계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민원 부지의 용도 변경(도로→산업시설용지) 및 매각을 위한 출판단지 실시계획 변경(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등의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삼척시가 군부대 시설을 이전하면 그 부지사용을 허가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 민원 사업과 관련된 제반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분양 받은 부지가 협소하여 계열사간 공동활용이 어려워 금전적 손해 및 회사 경영에 애로사항 발생	• 기업경영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

2) 시사점

- 민원접수 후 오랜기간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민원해결책 마련

10. 하남수산물상인조합 생계대책 마련

민원번호 : 2CA-1512-2225614 (산업농림환경민원과)

<민원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년 6월부터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이전대책이 무산되어 조합원들의 입찰보증금(51억원)은 국가에 귀속되고 법원의 강제집행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생계대책 마련 차원에서 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2천평을 수의계약으로 공급요구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하남수산물상인조합(회장 김○○)
-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하남사업본부장)
- 관련기관 : 경기도지사, 하남시장

2) 민원주요내용

- 국가에 귀속된 입찰보증금(51억원)을 환급해 주던지 그에 상응하는 상업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LH에 귀속된 입찰보증금(51억원) 대체 보전방안 마련 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기업이전대책 무산으로 계약을 불이행한 것인 만큼 입찰보증금 51억원환급 요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토지공급은 관련법규, LH 용지규정 및 하남미사지구 공급 승인서 내용의 공급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하남수산물조합에 수의계약 공급은 근거규정이 없어 수용 불가

- (경기도, 하남시장)

신청인의 근린상업용지 수의계약 공급요구는 관련 법상 수용 불가하나, 하남수산물 영세 상인회의 생계와 관련한 민원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의 규정 내에서 수용 가능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민원특성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조성 공급시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입찰보증금 귀속에 대한 영세수산물조합의 환급요구 기업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해 LH에 귀속된 입찰보증금(51억원) 대체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8회), 관계기관 협의(3회)
- 수산물상인회 조합원간의 이해관계 해소에 따른 의견통일과 피신청인의 입찰보증금 환급 당위성에 대한 끈질긴 설득 노력으로 민원 해소

2) 갈등해결수단 : 영세조합원에 대한 은혜적 보호가 절실함을 피력하고 설득 해결

5. 조정 결과

-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업이전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조합원 1인에 20㎡의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고, 입찰보증금 관련은 소송에서 해결

- (경기도지사, 하남시장)

기업이전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근린상업용지 공급 동의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하남영세수산물조합원 생계대책 마련 일환으로 수산물센터건립을 위한 조합원 분담금 국가 귀속으로 생계곤란 심각(은행 대출금 미상환 등)	국가귀속 입찰보상금 대체 보전방안 마련으로 영세수산물조합원 생계대책 마련

2) 시사점

- 2009년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LH와 조합간에 체결한 기업이전 공급토지의 계약이 무산되어 LH에 귀속된 입찰보증금 51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조합원의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해결

11. 시조묘 등 분묘 보존 요구

민원번호 : 2BA--1511-128782(산업농림환경민원과)

<민원개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사업 지구 내 편입된 토지에 소재한 거창유씨 시조묘 등 조상묘 7기의 분묘를 이장하라고 하니, 이를 철회시켜 조상묘가 존치하게 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신청인이 일체의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대신 피신청인이 도시관리계획상 또는 산업단지의 확장으로 반드시 분묘 이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한 분묘 존치를 허용하고, 벌초 및 시조묘 제사 등 분묘관리를 위한 신청인의 경관녹지 출입은 자유로이 허용하도록 조정·중재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유○○ 외 510명
- 피신청인 :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2) 민원주요내용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사업 지구 내 편입된 신청인의 조상묘 존치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따라 분묘를 존치하고는 공유재산 취득이 불가하므로 분묘존치 허용 불가
- 분묘 이전 시 전통에 따라 화장으로 조상묘 사라짐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조상묘가 사업지구 경계에 위치해 있어 존치하더라도 토지이용에 큰 지장이 없음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따라 분묘를 존치하고는 공유재산 취득이 불가하므로 분묘존치를 허용 불가
- (부산도시공사) 분묘가 산업단지 경계의 경관녹지에 위치하고 있어 분묘존치 시 도시관리계획상 특별한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준공인가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2) 민원특성 : 수혜적인 조치 요구 민원, 산업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2015. 11. 11. : 고충민원 접수(510명)
- 2015. 11. ~ 2016. 3.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4회)
- 2016. 3. 위원회 조정(안) 마련 및 협의
- 2016. 4. 위원회 조정(안) 수용 의사 확인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상호간 양보 및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신청인) 조상묘 총 7기에 대하여 일체의 분묘기지권을 포기하고, 도시관리계획상 또는 산업단지의 확장으로 인하여 향후 분묘 이장이 필요하게 될 경우 피신청인들의 요청에 따라 분묘 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며, 분묘관리 행위를 제외한 경관녹지 사용·훼손 행위는 할 수 없음
- (부산광역시 및 부산도시공사) 경관녹지 관리상 필요한 경우 분묘구역에 출입하여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인에게 사전통지하고 시행하며, 도시관리계획상 또는 산업단지의 확장으로 반드시 분묘 이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한 분묘 존치를 허용하고, 벌초 및 시조묘 제사 등 분묘관리를 위한 신청인의 경관녹지 출입은 자유로이 허용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신청인의 조상묘 사라질 위기 • 신청인의 조상묘 존치로 인한 산업단지 준공 불가	• 신청인의 조상묘 존치 • 산업단지 준공 절차 차질 없이 진행 • 산업단지 경관녹지 원활한 관리 가능

2) 시사점

- 약 5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350년 된 신청인 종중의 시조묘 등 조상묘 7기를 보존
- 피신청인은 위 민원으로 근 1년간 지연된 산업단지 준공 가능

산업단지 내 조상묘 분쟁 권익위 중재로 해결

거창 유씨 조상묘 보존·이전 문제로 완공 1년이 지나도록 준공을 하지 못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국제물류 1~2단계 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결돼 준공하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17일 부산 강서구 미음동 미음지구 개발사업 내에 편입된 거창 유씨의 중시조묘 2기를 포함해 총 7기의 분묘를 존치해달라는 민원을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 양산, 창원, 밀양 등지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거창 유씨 종중 510여 명은 지난 3년간 중시조묘를 포함해 조상묘 7기가 산업단지에 편입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부산시 등에 보존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거창 유씨 종중은 묘를 개장하면 이장하지 않고 화장해 산화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고 있어 350년이 된 중시조묘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그러나 부산시와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는 분묘가 산업단지의 완충녹지에 위치해 있으나 존치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설정돼 산업단지의 관리권 이전에 문제가 있다며 이장할 수 밖에 없다고 맞섰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있는 분묘 기지에 대한 지상권의 일종이다. 문제해결이 늦어지면서 부산도시공사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끝내고도 1년간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거창 유씨 종중은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7일 미음지구 내 국제물류 1~2단계 감리단 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거창 유씨 종중은 산업단지 내 포함된 분묘 7기에 대한 일체의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대신,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도시관리계획상 또는 산업단지의 확장으로 분묘이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상 분묘 존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인수 권익위 부위원장은 “거창 유씨 가문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민원을 해결하면서도 산업단지를 준공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기쁘다”고 밝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서울=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7일 오후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내 국제물류 1-2단계 감리단 회의실에서 미음지구 개발사업 내 편입된 거창 유씨 종중의 시조묘 등의 분묘를 존치시켜 달라는 민원을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했다.

김인수 권익위 부위원장이 현장을 방문해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있다. 2016.5.17 [국민권익위 제공]

photo@yna.co.kr

12. 첨단-담양 시외버스노선 조정 및 신설 요구

민원번호 : 2CA-1602-147657 (산업농림환경민원과)

<민원개요>

담양군 수북면, 대전면은 인접한 광주광역시 첨단지구와 동일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직접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없어 주민불편이 크므로 담양버스터미널에서 광주터미널까지 운행중인 시외버스를 첨단지구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방향으로 조정·중재

*기업 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주)○○운수 대표이사 김○○
- 피신청인 :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담양군수

2) 민원주요내용

- 담양군 수북면, 대전면은 인접한 광주광역시 첨단지구와 동일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직접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없어 주민불편이 크므로 첨단지구로 경유하는 버스노선을 조정 요청
- * 2016. 1. 담양지역 기업인 간담회시 건의된 민원임

2. 주요 쟁점사항

- 준공영제로 인한 광주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문제 발생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광주광역시의 동의를 필요함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동일 생활권에 대한 버스노선 조정요구

- (광주광역시) 준공영제로 인한 재정부담 및 나주, 장성, 화순 등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문제 발생
- (전라남도지사) 국토교통부에 조정신청을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담양군수) 주민들 이용불편,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노선 변경(조정)이 필요함

2) 민원특성 : 집단민원, 기업관련 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해 해결방안에 대한 조정·중재안 도출
- 권익위 주재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담양군의 업무담당자와 광주버스사업조합 관계자 및 버스회사 대표(10명 정도) 등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여 현장회의를 개최하여 합의 방향 결정
- 여러차례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합의안 마련
- ※ 2015년 신청인의 요청으로 전라남도지사가 국토교통부에 조정 신청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임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광주광역시)

현재 운행하고 있는 담양버스터미널에서 광주터미널까지 시외버스를 광주광역시 첨단지구(세종문고)를 경유하여 운행하는데 동의
- (전라남도지사)

시외버스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위하여 광주시에 협의(동의)를 요청
- (담양군수)

승하차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버스승강장 표시 등 편의시설을 설치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동일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직접 경유하는 버스 노선이 없어 주민 생활 불편 및 경제적 손실 발생	버스 노선 조정으로 주민 생활 불편 해소

※ 2016. 11. 10.부터 담양~광주 첨단지구 경유 버스 운행으로 주민불편 해소

2) 시사점

-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버스회사의 이해관계 및 형평성 문제가 있는 민원에 대하여 여러 차례 협의와 설득을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

13. 용인, 성북지구 대체도로 개설

민원번호 : 2CA-1511-291252 (산업농림환경민원과)

<민원개요>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 ○○2차아파트 주 출입구에서 성북역까지 연결되는 용인시 수지로 △번길을 □□건설(주)이 시공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포함된다
는 이유로 폐도를 하고, 대체도로는 4년이 지난 준공시점에 개설해 준다고 하는데, 700여 세대 주민들이 이용하는 진출입도로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면 주민불편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대체도로를 개설하도록 조정·중재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입주자 대표(오○)
- 피신청인 : 용인시장
- 이해관계인 : 시행사, 시공사

2) 민원주요내용

-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 ○○2차아파트 주 출입구에서 성북역까지 연결되는 용인시 수지로 △번길을 □□건설(주)이 시공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포함된다
는 이유로 폐도를 하고, 대체도로는 4년이 지난 준공시점에 개설해 준다고 하는데, 700여 세대 주민들이 이용하는 진출입도로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면 주민불편이 크므로 대체도로 개설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토지보상 및 민원사항을 해결한 후 시행하여야 하는 관계로 조기개설은 곤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이용중인 도로를 폐쇄하고 대체도로를 4년뒤에 개설 해주는 것은 주민

불편이 크므로 조속한 개설 요구

- (용인시장) 토지보상 및 민원사항을 해결한 후 시행하여야 하는 관계로 조기개설은 곤란
- (이해관계인)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수지로 △번길 폐쇄에 따른 대체도로를 조기에 개설토록 최대한 노력

2) 민원특성 : 집단민원(700세대)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용인시, 용인서부경찰서, 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해 해결방안에 대한 조정·중재안 도출(5회)
- 공사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비용부담 및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출입구 추가개설이 무산되는 등 조정해결에 장기간 소요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용인시장)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 지원·협조
- (시공사) 대체도로 2개소 조기 개설 및 지하도 날개벽 철거로 신청인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아파트 출입구를 조속히 개선(차단기, 문주설치 관리초소 설치)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인근 주상 복합단지 공사로 현재 이용 중인 도로의 폐쇄로 생활 불편 발생	• 조속한 대체도로 개설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 해소

2) 시사점

-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 폐쇄로 통행에 불편을 겪은 신청인 및 인근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원만히 해결됨은 물론 갈등해소로 순조로운 지역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마련됨

14. 대전 판암 주공아파트 철도소음 저감대책 마련 요구

민원번호 : 2BA-1508-337079 (산업농림환경민원과)

<민원개요>

신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 기존 경부선(세천역~대전역)도심통과 구간에 경부고속철도가 새로이 건설되어 기존 경부선 철도 소음과 새로 생긴 경부고속철도 소음이 더해져 아파트 입주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아파트 주민들의 수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피신청인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흡음률이 높은 방음벽을 설치하고 관련 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기관차의 운행소음 감소 대책마련’ 하여 철도소음 저감에 기여하도록 조정·중재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아파트 입주자 대표 최○○
- 피신청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 관련기관 : 한국철도공사

2) 민원주요내용

- 아파트 앞 철도소음으로 입주민들이 주거 생활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입고 특히 야간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니 이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아파트 주변 철도는 기존 경부선이 아파트 건설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어 철도 설치 이후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주택사업자가 소음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이 민원 수용은 곤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기존 경부철도 상부에 경부고속철이 신설되어 현재 철도소음이 증가되었으니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마련 요구
- (한국철도시설공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로 수용이 곤란
- (한국철도공사) 철도운행소음이 높은 디젤기관차는 최소화 운행 중

2) 민원특성 : 철도 소음관련 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해 방음벽 설치방법 등에 대한 조정·중재안 도출
- 신청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이에 대한 조정방안 검토
- 신설 고속철에 대한 소음과 기존 경부선 철도 소음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협의(6회 : '15. 11. 20, 12. 16, '16. 5. 4, 7. 27, 8. 3, 9. 20.)
- 철도·도로 소음 대책 마련

3) 갈등해결수단 :

- 기존 경부선 철도구간 위에 경부고속선이 설치되므로 소음의 증가, 철도상부 구조로 인한 저층소음의 심화 등을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합의점 도출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법령해석 등

5. 조정 결과

-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존 경부선 앞 아파트 앞 약 226m와 신설 경부고속철 소음 심화구간 80m 구간에 흡음률이 높은 방음벽을 설치
- (한국철도공사) 디젤기관차 감축운행 노력 및 기적소음 자제 등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소음 측정결과 주간·야간 소음이 기준치 초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철도·도로 소음으로 인하여 주거 생활이 방해됨	○○아파트 인근에 철도소음 방음벽 설치 및 디젤기관차 감속운행을 통하여 주·야간 쾌적한 주거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2) 시사점

- 약 12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다수인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15. 동두천시 지행역 인근 철도소음 저감대책 요구

민원번호 : 2BA-1605-446434 (산업농림환경민원과)

<민원개요>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역 부근 서쪽편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동쪽편은 방음벽이 없어 철도소음으로 인한 수면장애 등 생활피해가 심각하니 해결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두천시와 각각 50%씩 비용분담을 통해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주거환경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정·중재

*집단 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박○○ 외 472명
- 피신청인 : 경기도 동두천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 관련기관 : 한국철도공사

2) 민원주요내용

- 동두천시 지행역 인근 동쪽편 철도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 등 소음 저감 대책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방음벽 설치 주체 및 비용부담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수면장애 등 주거생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함
- (동두천시) 민원 지역은 야간 철도소음 기준치를 초과하므로 방음시설 설치 필요
-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건설 이후 후발사업자인 주택사업자측에서 소음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함
- (한국철도공사) 방음벽 설치 공사시 철도운행선 인접공사 및 철도보호지구에서 시행되는 본 공사에 대하여 적극 협조

2) 민원특성 : 환경피해 구제,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고충민원 접수 후 현장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 등 조정·중재안 도출(5회 : '16. 5. ~ '16. 9.)
 - 고충민원 접수('16. 5.)
 - 위원회 조정·중재안 마련('16. 8.)
 - 위원회 조정·중재안 수용 의사 확인('16. 9.)

2) 갈등해결수단 : 이해·설득, 관련 판례

5. 조정 결과

- (동두천시) 방음벽(L=1,800m, H=2.5m)설치 비용 50%분담 및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 (한국철도시설공단) 방음벽 설치 비용 50%분담, 설치공사 수행 및 사후 유지관리 이행
- (한국철도공사) 철도운행선 인접 및 철도보호지구내 방음벽 설치공사에 적극 협조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철도 소음으로 인한 수면장애 등 주거생활 피해	철도소음 저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여건 마련

2) 시사점

- 약 4개월 동안 현장조사와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철도소음 저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여건 마련

16. 중금속 오염지역 주민이주 요구

민원번호 : 2AA--1609-281282(산업농림환경민원과)

<민원개요>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구)장항제련소로부터 발생한 중금속으로 심하게 오염된 곳이나 환경부가 시행하는 오염부지 매입사업 구역에서 제외되어 주민이주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고 주민 대부분이 이주한 상태에서 잔여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임을 인정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의 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규정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이주 및 보상을 실시하도록 조정·중재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박○○ 외 6명
- 피신청인 : 한국환경공단

2) 민원주요내용

- (구)장항제련소로부터 발생한 중금속으로 오염된 부지에 거주한 주민들의 이주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의 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규정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이주 및 보상 가능 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중금속으로 심하게 오염된 곳으로 즉시 이주 요구
- (한국환경공단) (구)장항제련소로부터 1.5km 반경은 중금속 오염부지인 매입구역에 해당되나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산림청 소유 부지로서 산림청과의 관리전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곳으로 주민 이주 및 보상은 불가

2) 민원특성 : 수혜적인 조치 요구 민원, 환경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16. 9. 27. 고충민원 접수(박○○ 외 6인)
- '16. 9. 28. 관련자료 제출 요청
- '16. 9. 29. ~ 10. 21. 위원회 조정(안) 마련 및 협의
- '16. 10. 28. 현지조사
- '16. 11. 1. 위원회 조정(안) 수용 의사 확인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5. 조정 결과

- (한국환경공단)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중금속으로 오염된 곳이며, 주민 대부분이 이주한 상태에서 잔여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임을 인정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의 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규정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이주 및 보상을 실시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신청인들이 중금속으로 오염된 곳에서 계속 거주함에 따른 건강 우려	이주 및 보상을 통해 오염되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 가능

2) 시사점

- 약 2개월 동안 현장조사와 피신청인간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신청인들이 더 이상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지에 거주하지 않게 됨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인근 중금속 오염지역 주민 이주·보상 해결



clip20161106103745 0
1949년 장항제련소 전경.

서천/아시아투데이 배승빈 기자 = 충남 서천군 소재 옛 장항제련소 인근 중금속 오염지대에 거주하는 박모씨 외 6명이 제기한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환경 피해 및 대책 요구가 해결됐다.

6일 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그간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4일 장항제련소 매입구역 정화사업 현장사무실에서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과 한국환경공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17. 산업단지 설계변경 승인 요구

민원번호 : 2AA-1609-070239 (산업농림환경민원과)

<민원개요>

김해 신천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비탈면의 시공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현장여건에 맞추어 잘못 시공하여 준공승인을 못 받게 되어 입주회사들이 부도를 겪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 상태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복구설계서 승인 후 신청인이 산지관리법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할 경우 준공 승인을 해 주기로 조정·중재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주)○○씨앤씨 대표이사 장○○
- 피신청인 : 김해시장
- 관계기관 : 산림청장

2) 민원주요내용

- 김해 신천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비탈면의 시공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현장여건에 맞추어 잘못 시공하여 준공승인을 못 받게 되어 입주회사들이 부도를 겪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 상태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신청인의 과실로 위법하게 시공된 사항으로,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설계변경 승인이 가능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김해 신천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비탈면의 시공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현장여건에 맞추어 잘못 시공하여 준공승인을 못 받게 되어 입주회사들이 부도를 겪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 상태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요구
- (김해시장) 신청인의 과실로 위법하게 시공된 사항으로,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설계변경 승인이 가능
- (산림청) 산업단지 비탈면은 「산지관리법」의 허가기준 및 복구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함

2) 민원특성 : 기업고충민원(17개 기업)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기준대로 시공하지 않고 잘못 시공한 사항을 인정할 경우 관련법 위반과 특혜시비 및 유사민원 재발 우려
- 권익위 주관으로 산림청, 경상남도, 김해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현장조사에서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재시공 및 보완토록 사업시행자(신청인)를 설득하여 재시공하기로 합의안 도출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신청인) 도로변 옹벽구간을 산지관리법 상의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복구기준에 적합하도록 철거 후 재시공, 산업단지내 옹벽구간을 산지관리법에 적합하도록 보완 시공
- (김해시장)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복구설계서 승인 후 신청인이 산지관리법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할 경우 준공 승인
- (산림청장) 시공 계획이 산지관리법에 적합함을 확인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17개 입주기업 도산위기	• 1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되었던 김해 신천일반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의 고충 해결

2) 시사점

-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영세 기업의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고자 하는 관계기관의 의지가 합치되어 1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되었던 김해 신천일반산업단지의 17개 입주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여 부도 위기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 가능

18. 대구 ○○아파트 소음저감요구

민원번호 : 2AA-1601-234110 (산업농림환경민원과)

<민원개요>

대구 동구 금호강변로 소재 ○○아파트 인근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동대구IC 주변 교통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많으니 방음대책 마련요구에 대하여 관계기관에서 방음벽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시공한 후 ○○고속도로(주)에서 사후 관리하기로 조정·중재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장 김○○)
- 피신청인 : 대구 동구청,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 관련기관 : (주)○○

2) 민원주요내용

- 동대구IC 주변 교통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많으니 방음대책 마련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이 민원아파트가 도로 개설 후 건설 되었으므로 관련기관인 공동주택사업자가 방음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도로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많아 조속한 대책을 마련

- (대구 동구청)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의거 소음도 측정결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른 소음기준을 만족하여 적합하게 사용 검사가 이루어 졌음.
- (○○고속도로(주)) ○○아파트 건립 전에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공동주택사업자가 방음대책을 마련해야 함.
- ((주)○○) 아파트분양 당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분양 아파트는 고속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소음이 있을 수 있음을 적시하고 안내하였음.

2) 민원특성 : 도로소음관련 민원으로 책임 주체에 대한 확정이 요구 됨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해 방음벽 설치 및 저소음 포장 등에 대한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6회)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법령해석 등

5. 조정 결과

- (동구청)
 - 방음벽 설치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적극 이행
- (○○고속도로(주))
 - (주) ○○이 신규 및 추가 설치한 방음벽 시설물을 준공 즉시 관리전환 받아 사후 유지관리를 이행
- ((주)○○)
 - 신규 및 추가 설치에 소요되는 방음벽 설치비용(3억원 정도)을 전액 부담하여 시공한 후, 즉시 ○○고속도로(주)에 관리전환을 이행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신대구 ~ 부산 고속도로 소음으로 기본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움	• 방음벽 설치에 따른 도로소음 저감으로 주거생활 안정화

2) 시사점

- 피신청기관, 관계기관과 장기간에 걸친 협의를 통하여 함께 노력한 결과, 다수인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19. 초등학교 인근 건축공사장 어린이 안전대책

민원번호 : 2BA-1512-329006 (주택건축민원과)

<민원개요>

화랑초등학교 정문 앞 건축공사장 진출입 공사차량으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등하교 시간 공사장 진출입 차량 통행금지, 교통시설물 설치, 배움터 지키미 교통지도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정·중재

*다수인 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화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장○○(외 219명)
- 피신청인 :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2) 민원주요내용

- 초등학교 인근 건축공사장 작업차량 통행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대책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초등학교 인근 건축공사장 작업차량 이동경로 변경 가능성
- 건축공사장 주변 어린이 안전대책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초등학교 인근 건축공사장 교통안전 대책 요구

- (서구청장) 건축주에게 건축물 차량 출입구 변경, 작업차량으로 인한 수업방해 등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
- (화랑초학교장)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배움터 지키미를 통한 교통안전 지도

2) 민원특성 : 다수인 집단민원(220명)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협의
- 관계기관 담당자 협의를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
- 초등학교 인근 건축공사장 어린이 안전대책 조정·중재안 도출

2) 갈등해결수단 : 민원 발생원인 파악 및 민원해소 중재안 제시

5. 조정 결과

- (서구청장) 건축주 등 건축 관계자로 하여금 이 민원 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소음 등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 점검
 - 학생 등하교 시간 및 공사차량 진출입 시 신호수를 상시 배치
 - 작업자 안전교육과 수업 중 소음 작업을 최소화
 - 공사장 주변 살수작업을 수시로 실시하여 먼지 발생을 최소화
 - 화랑초등학교 및 서부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서구청 예산으로 횡단보도를 이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관리
- (화랑초교장)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지도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초등학교 인근 건축공사장 작업차량 통행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	건축공사장 주변 교통안전 대책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2) 시사점

- 약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건축주 및 관계기관의 협업을 통해 민원 해결방안 마련
- 교통법규 등을 인지하기 어려운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대비책 마련

권익위, 부산 화랑초등 공사장 주변 어린이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기사입력 2016.02.17 15:14 최종수정 2016.06.14 22:27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부산 화랑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 서구 소재 화랑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14층 규모의 주상복합 신축공사가 진행되면서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현장 사진>



폭 8미터(차로 6.5미터, 보도 1.5미터)에 불과한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학교 바로 앞 건널목에서 공사가 진행되다보니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화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등 학부모 220명은 작년 12월 공사 차량으로 인해 학생들이 다칠 수 있으므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성영훈)는 17일 오후 부산시 서구 화랑초등학교 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앞 어린이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해결했다./사진=권익위

권익위는 현장 조사 및 건축주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7일 오후 2시 화랑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대표, 부산 서구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 주재로 최종합의를 이끌어냈다.

부산 서구청은 부산 서부경찰서와 협의해 공사장 인근 횡단보도를 안전한 위치로 이전하고, ▲과속방지턱과 보행자 안전용 가드레일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공사차량 진출입 시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며 ▲수업 중에는 소음이나 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을 자제키로 했다.

화랑초등학교는 공사장 주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지도를 철저히 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의환 고충처리국장(가운데)이 17일 오후 부산시 서구 화랑초등학교 회의실에서 초등학교 앞 어린이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는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권익위

권익위 관계자는 “부산 서구청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 시간을 조정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완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 완충녹지 일괄보상(부전-마산 복선철 경계) 요구

민원번호 : 2BA-1510-187888 (도시수자원민원과)

<민원개요>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에코델타시티사업)과 부전~마산 복선철도 민간투자건설사업(부마철도사업)으로 폭 40m이상의 완충녹지(이 민원 완충녹지)가 조성되는바, 이 민원 완충녹지가 에코델타시티사업과 부마철도사업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는 이유로 각 사업주체별로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니 일괄 보상 요구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반○○외 19명
- 피신청인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관계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2) 민원주요내용

- 이 민원 완충녹지를 사업별로 달리하지 말고 같은 시기에 보상추진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같은 목적의 완충녹지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다른 경우 보상을 같이할 지 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보상시기가 다른 경우 보상가격 차 발생등에 따른 이주 부담 등을 우려
-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안임

-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괄보상 추진 필요

2) 민원특성 :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각 기관이 협조 가능한 내용을 정리하여 일괄보상 추진 검토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2회)

2) 갈등해결수단 : 합리적인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피신청인 전체) 이 민원 완충녹지의 폭은 40m로 하고, 부마철도사업에서 폭 10m, 에코델타시티사업에서 나머지 완충녹지를 설치
- (한국수자원공사) 부마철도사업의 보상 일정에 맞추어 나머지 완충녹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2016년 상반기 중에 진행
- (국토교통부장관) 에코델타시티사업자가 추진하는 (가칭)에코델타시티역사신설 타당성평가 용역결과에 따라 용역검증 및 역사명칭 선정 등 철도역사 신설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관계 규정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국고 지원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일괄보상이 안될 경우 철도사업 추진 곤란 및 상이한 이주 시점으로 인한 문제	•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보상대상자의 이주 시점 통일로 문제 해결

2) 시사점

- 같은 목적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보상일정의 일원화를 강제하기는 어려움
- 각 사업자가 지닌 재량의 범위내에서 상호 협조하여 공익사업의 정상추진 도모

국민권익위원회, 부전~마산 복선철도 민간투자건설사업 보상 갈등 해결

한국수자원공사가 올해 상반기 중 보상 추진 합의

노충근 기자 n-chg@hanmail.net



(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 건설단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부전~마산 복선철도 민간투자건설사업 보상 갈등 고충민원을 해결했다.

이번 고충민원은 부마철도사업자가 지난해 10월부터 완충녹지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을 시작, 에코델타시티사업자의 보상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동일 구역 보상 시기가 달라 보상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것 등을 우려하는 집단민원이 권익위에 제기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수차례에 관계기관 실무협의회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박창수 상임위원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스마트레일(주) 등 관계자가 참석한 현장조정회의에 합의했다.



이날 권익위의 조정에 따라 완충녹지 전체 40m 중 10m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스마트레일(주)이 보상?설치를 담당하고 30m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상?설치를 담당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2016년 상반기 중 완충녹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권익위 박창수 상임위원은 "일괄 보상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이끌어 고충이 해소된 좋은 사례이다"고 말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 보상갈등 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 건설단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인근 주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에코델타시티사업)과 부전~마산 복선철도 민간투자건설사업(이하 부마철도사업)을 둘러싼 보상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가하천 주변을 개발, 주거·상업·업무·예술·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수변공간으로 조성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6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 건설단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인근 주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에코델타시티사업과 부마철도사업이 남해고속도로 남쪽에 위치한 동일 구역에서 시행됨에 따라 조성해야 하는 폭 40m의 완충 녹지 중 10m는 부마철도사업측이 담당하고 30m는 에코델타시티사업자가 조성하기로 돼 있었다.

이에 따라 부마철도사업자는 2015년 10월부터 완충녹지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을 시작했으나 에코델타시티사업자의 보상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동일 구역임에도 보상 시기가 달라짐으로 인해 보상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것 등을 우려하는 집단민원이 권익위에 제기됐다.

권익위는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현장조사 등을 거쳐 이날 오후 박창수 상임위원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스마트레일㈜ 등 관계자가 참석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권익위의 조정에 따라 완충녹지 전체 40m 중 10m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스마트레일이 보상·설치를 담당하고 나머지 30m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상·설치를 담당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는 올 상반기 중 완충녹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권익위 박창수 상임위원은 “일괄 보상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이끌어 내어 고충이 해소된 좋은 사례”라고 전했다.

박희송 기자 heesking@daum.net

21. 충주댐 조성으로 수몰된 舊단양시까지 하천구역 변경 요구

민원번호 : 2BA-1411-132158 (도시수자원민원과)

<민원개요>

충주댐 건설 이후 하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충북 단양군 단성면 상·하방리 일원 舊단양시까지(민원 부지, 약 53,744㎡)는 충주댐 홍수위(145m)와 높이가 비슷함에도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어려워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니 이 민원 부지 일대에 대한 하천구역 변경 요구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이○○외 295명
- 피신청인 : 충북 단양군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2) 민원주요내용

- 민원 부지를 하천구역에서 제척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댐조성에 따른 계획홍수위 이하에 있는 부지에 대한 하천구역 변경 추진의 검토가 타당한 지 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생활 불편 지속

- (충북 단양군수) 하천구역 제출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토지로 사용 필요
- (한국수자원공사) 댐조성으로 보상된 하천구역내 토지를 제척한 사례 없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 관리상 문제가 없는지 사전 검토 필요

2) 민원특성 :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각 기관이 협조 가능한 내용을 정리하여 하천구역 변경 추진 검토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7회)

2) 갈등해결수단 : 합리적인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충북 단양군수) 민원 부지 일대에 대하여 홍수시에 침수되지 않도록 성토계획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변경(안)을 마련하여 2016년 말까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기본계획 변경 건의,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되면 비용을 부담하여 하천기본계획 변경으로 수반되는 사업을 시행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단양군이 건의하는 하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의견을 조회하고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
- (한국수자원공사) 하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댐 관리상의 문제를 검토하여 의견 제출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하천구역 변경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장기간 계속	• 장기 집단민원 해소 및 댐사업에 따른 하천구역변경 민원 해결 가능

2) 시사점

- 댐건설로 보상된 수몰지(홍수위내 토지)에 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기는 사실상 어려움
- 댐건설 보상부지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면 하천구역 변경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민원 처리 과정 마련

권익위, 舊단양시가지 개발 가능...민원 중재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오후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사무소에서 충주댐 조성으로 수몰된 구 단양시가지를 개발 가능하도록 하천구역의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현장조정으로 해결했다. 사진은 김인수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수몰된 구(舊)단양시가지 일부 지역이 하천구역에서 제외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그 동안 수몰지로 보상돼 하천구역으로 관리되던 구(舊)단양시가지 일부 지역(약 5만3000㎡)에 대해 하천구역의 변경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현장조정으로 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북 단양군 단성면 상방리·하방리 일대 구 단양시가지는 충주댐 건설 이전에는 단양군청이 소재하던 시가지였으나 지난 1985년 충주댐 건설로 단양군청이 현재 소재지로 이전됐다.

현재 구 단양시가지는 245세대 448명이 거주하는 소규모 거주지로 변경된 상태며 수몰지 중 일부 면적을 단양군이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지난 2005년부터 체육공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근 지역주민들은 체육공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의 높이가 충주댐 홍수위(홍수가 발생할 정도의 수위)인 145m와 비슷해 침수 위험이 거의 없는데도 하천구역에 편입돼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천구역을 변경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대못 규제'로 폐허된 충주댐 수몰지 30년만에 개발 길 열려

'대못 규제'로 폐허된 충주댐 수몰지 30년만에 개발 길 열려수공 옛 단양군청 소재지 침수위험
없는데도 하천구역 고집, 개발 불허
권익위 중재로 해제...생계위협 주민숙원 해결, 단양군 신도시 추진

(단양=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충주댐 건설 이후 하천구역으로 묶여 30여 년 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충북 단양군 단성면 옛 군청 소재지 개발 길이 열렸다.



구단양의 옛 모습(왼쪽)과 현재 모습[국민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단양군 단성면사무소에서 현장 민원조정 회의를 열어 단성면 상·하방리 일대 5만3천744㎡를 하천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관계기관 및 주민 대표와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류한우 단양군수와 원주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주민 대표들이 참석했다.

합의 내용이 국토교통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확정돼 하천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이 일대는 건물 신·증축을 비롯한 각종 개발 행위가 가능해진다.

'구단양'으로 불리는 단성면 상·하방리 일대는 1985년 충주댐 건설 이전까지 군청 소재지로, 단양의 최대 번화가였다.

댐 건설로 군청 소재지가 지금의 신단양(단양읍)으로 이전하면서 급속히 쇠락해 현재는 245가구 448명만 사는 소규모 마을로 전락했다.

단양군은 이곳에 남은 주민의 생계와 복지를 위해 수몰지 중 일부를 수자원공사로부터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상가와 체육공원으로 활용해왔다.

신단양 이주 초기에는 이주 주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져 그럭저럭 경기가 괜찮았지만, 1990년대 이후 인적이 끊기다시피 했다.

주민들과 단양군은 낡은 시설 개선을 통해 부활을 꾀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이 일대가 건물 증·개축 등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충주댐 하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다.

어쩌다 단성면을 찾은 방문객들은 폐허를 방불케 하는 낡은 상가를 외면했고, 장사가 안 되니 얼마 안 남은 주민들마저 하나 둘 고향을 등지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생계마저 위협받던 주민들은 이 일대를 하천구역에서 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결정권을 쥔 수자원공사는 충주댐 홍수위(146.23m)보다 지대가 낮아 하천구역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실제로는 침수 위험이 전혀 없는데도 '대못 규제'에 묶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 30년이나 이어졌다.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2014년 "침수 위험이 없으니 하천구역 지정을 변경해달라"는 청원서를 권익위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권익위는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 조사를 거쳐 침수 위험을 없애는 조건으로 하천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단양군은 홍수가 발생하더라도 이 일대가 침수되지 않도록 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 등 하천 기본계획을 이행하기로 했다.

가건물로 지어진 상가를 재개발하는 등 하천구역에서 풀리는 지역 전체를 신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은 "댐 건설로 보상이 이뤄진 수몰지의 하천구역이 변경된 사례가 없었으나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구역을 조정했다"며 "생계 위협으로 고통받던 주민 숙원이 해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kong@yna.co.kr
(끝)

22. 하남미사지구 가나안농군학교 건축물 이전 요구

민원번호 : 2BA-1512-078034 (도시수자원민원과)

<민원개요>

하남미사지구내 역사공원이 인접한 공동주택 조성부지 보다 높아 공원 접근성이 불량하고 조망권 침해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니 가나안농군학교 건축물(민원 건축물)을 이전하고 역사공원 높이를 낮추어 달라고 민원제기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강○○외 679명
-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지사, 하남시장
- 관계기관 : 가나안농군학교

2) 민원주요내용

- 역사공원이 공동주택 부지보다 주거환경을 저해하니 민원 건축물을 이전 및 역사공원 높이 하향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민원 건축물 복원계획 수립을 통한 역사공원 높이 조정 가능 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민원 건축물을 이전 및 역사공원 높이 조정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따라 가나안농군학교 부지를 역사공원으로 지정
- (경기도지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용 존중 필요, 하남선 복선전철공사 시행시 민원 건축물 노후로 균열 등이 피해가 예상되니 이전 필요
- (하남시장) 민원 건축물 이전하고 역사공원 높이 하향 조정 필요

- (가나안농군학교) 현재 운영중인 양평으로 민원 건축물을 이전하여 주거나, 역사
공원내 보존 요구

2) 민원특성 :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관계기관 협의 등 (총 5회)]

- '15. 12. 11. : 역사공원 높이를 낮추는 기술적인 방안 검토
- '16. 1. 15. : 역사공원내 가나안농군학교 보전방안 논의
- '16. 1. 22. : 접근성이 편리한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
- '16. 2. 3. :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조정서(안) 초안 작성 및 현장조정계획 설명
- '16. 2. 4 ~ 2. 10. : 조정서(안) 의견조회
- '16. 2. 11. : 조정서(안) 확정

2) 갈등해결수단 : 합리적인 조정안 제시, 관계기관(가나안농군학교)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사공원 높이 조정을 포함한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민원 건
축물 복원
- (경기도지사) 하남선 복선전철공사 조속 추진
- (하남시장) 공원시설 인수 후 공원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
- (가나안농군학교) 민원 건축물 복원에 대한 자문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역사공원 높이 조정 불가시 입주민의 주거환경 악화 및 전철공사 착공 불가	• 민원 건축물 복원계획 수립으로 주거 환경 개선 등 지역발전 원동력 제공

2) 시사점

- 민족계몽운동과 새마을운동의 모태인 가나안농군학교가 복원되어 좋은 역사교육
시설로 보존

- 입주예정자들의 주거환경 및 역사공원 이용 편의성 개선과 하남선 복선전철사업
공사도 조속히 재개되는 등 지역발전 원동력을 제공하는 계기 마련

'새마을운동 모태' 가나안농군학교 건물 철거 후 복원

'새마을운동 모태' 가나안농군학교 건물 철거 후 복원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옛 건물 이전 문제 해결 합의

(하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새마을운동의 모태가 됐던 하남 '가나안농군학교' 옛 건축물의 이전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결됐다.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사지구 A20블록 입주 예정자 등 30여명은 18일 LH 미사사업본부에서 국민권익위 중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LH는 노후한 농군학교 옛 건축물을 철거한 후 인접한 공동주택의 조망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반 높이를 낮춰 건축물을 복원하기로 했다.

또 하남시는 LH와 협의해 역사성이 부각될 수 있는 역사공원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경기도는 하남선 복선전철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정안은 여러 차례 실무 협의와 조율을 거쳐 마련됐으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가나안농군학교는 1954년 11월 하남시 풍산동 168의3 일대 4만여㎡ 부지에 가나안농장으로 설립된 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근검, 절약 정신을 가르치는 지역 공동체 운동을 폈다.

이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모태가 됐다.

그러나 이곳 농군학교 터가 LH가 시행하는 미사보금자리 주택지구(550만㎡)에 포함돼 설립 50여 년 만에 하남시 풍산동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해 말 양평군 지평면으로 옮겨 새 동지를 틀 었다.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라는 역사성을 고려, 이전하고 남은 풍산동 농군학교 본관 건물과 교회는 현대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역사공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미사지구 입주예정자들은 농군학교 옛 건물이 위치한 역사공원의 대지 높이가 인접한 공동주택보다 높아 조망 및 사생활이 침해되고 노후 건물의 균열 등을 우려, 농군학교 옛 건축 물의 이전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냈다.

이날 합의로 철거 후 복원되는 농군학교 옛 건축물은 본관(265㎡)과 큰 교회당(284㎡), 작은 교회당(43㎡) 등 총 3개 동이다.

gaonnuri@yna.co.kr
(끝)

23. 하동, 북천천 재해예방대책 수립 요구

민원번호 : 2BA-1601-213266 (도시수자원민원과)

<민원개요>

경남 하동군 소재 북천천(지방하천) 상류부와 하류부에 대한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중류부의 약 800m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이 지연되어 농경지 및 가옥 등에 대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재해예방대책 수립을 요구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북천면 직전마을 이장 문○○외 15개마을 이장
- 피신청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경상남도지사, 하동군수

2) 민원주요내용

- 북천천 중류부에 대한 하천정비사업 지연으로 농경지 등에 대한 침수피해 대책 수립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하천 관리자(경상남도지사)와 도로 관리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간 하천정비사업 비용부담 주체 결정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북천천 중류부에 대한 하천정비 등 재해예방대책 조속 추진 요구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기획재정부 등에 도로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반영을 요청 하였으나 미반영된 사항으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맞추어 하천관리자가 재해 예방대책 수립 필요
- (경상남도지사) 도로사업에 하천사업을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기 협의하였으므로 도로사업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천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하동군수) 하천사업 착수 이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우기 등 집중호우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 민원특성 :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관계기관 협의 등 (총 5회)]

- '16. 3. 15.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
- '16. 3. 25. : 과장급 실무회의
- '16. 4. 28. : 지방하천종합계획 관련 관계기관 회의
- '16. 5. 19. : 조정서 초안 작성
- '16. 5. 24. : 과장급 실무회의(조정서안 확정)
- '16. 6. 2 ~ 6. 9. : 조정서(안) 의견조회
- '16. 6. 10. : 위원회 조정서 서명 및 확인
- '16. 6. 13. : 조정서 송부(신청인 및 피신청인)

2) 갈등해결수단 : 합리적인 조정안 제시, 관계기관(경상남도지사)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경상남도지사) 북천천, 2017년 신규사업으로 우선 추진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정비계획 검토 후 정비사업 예산 반영
- (하동군) 정비사업 완료 이전에 필요시 재해예방대책 수립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우기 등 집중호우시 지속적인 농경지 및 가옥 등 침수피해 발생	• 북천천 중류부 하천정비사업 완료시 침수피해로부터 안전한 농경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2) 시사점

- 북천천 중류부 하천정비사업 비용부담 주체를 둘러싼 하천관리자와 도로관리자간 갈등의 해결하여 안전한 삶의 터전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24. 광교신도시 공영주차장내 택시쉼터 이전 요구

민원번호 : 2BA-1610-082356 (도시수자원민원과)

<민원개요>

광교신도시 이주택지내 공영주차장에 택시쉼터 설치로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안전에 위협하고 있으므로 택시쉼터를 이전하여 주고 교통안전대책 수립 요구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김○○외 269명
- 피신청인 : 수원시장, 수원남부경찰서장
- 관계기관 : 전국택시노동조합 경기수원지부장

2) 민원주요내용

- 광교신도시 공영주차장내 택시쉼터 이전 요구 등

2. 주요 쟁점사항

- 택시쉼터 이전 및 교통안전대책 수립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공영주차장에 택시쉼터 설치로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안전에 위협하므로 택시쉼터 이전 요구
- (수원시장) 이주택지내 주차공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택시쉼터 대체부지를 마련하여 이전하겠음
- (수원남부경찰서장) 이면도로 중앙차선 설치에 주민동의가 전제될 경우 일부구간에 중앙차선을 설치할 계획

- (전국택시노동조합 경기수원지부장) 수원시가 적정한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주면 택시 쉼터 이전에 동의하겠음

2) 민원특성 :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관계기관 협의 등 (총 4회)]

- '16. 11. 3. : 이주택지내 주민의견 청취 및 택시쉼터 이전 필요성 논의
- '16. 11. 11. : 이주택지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확인 및 교통안전 시설 설치 논의
- '16. 11. 17. : 원천택시쉼터 이전 방법 및 대체부지 마련방안 논의
- '16. 11. 21. ~ 11. 25. : 조정서(안) 의견조회
- '16. 11. 28. : 조정서안(확정)

2) 갈등해결수단 : 합리적인 조정안 제시, 관계기관(수원시장)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수원시장) 택시쉼터 대체부지 확보하여 조속히 이전
- (수원남부경찰서장) 중앙차선 설치가 필요하가 구간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차선 설치
- (전국택지노동조합연맹 경기수원시지부장)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택시쉼터를 대체부지로 이전에 동의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공영주차장에 택시쉼터 입지로 이주택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차난 가속	• 택시쉼터 이전으로 이주택지의 고질적인 주차난이 해소

2) 시사점

- 이주택지 주민들이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 되어 고질적인 주차난이 해소 되어 이주택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안전대책을 마련

국민권익위, 공영주차장 내 택시운전자 쉼터 이전 요구 민원 중재

수원시가 대체 부지 확보하여 이전키로

김용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수원시 영통구 공영주차장 내 택시운전자 쉼터 이전을 둘러싼 집단민원을 조정했다.

수원시는 지난 2013년 택시운전자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으로 영통구 월드컵로 97번길 부근 공영주차장 내에 쉼터를 조성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쉼터 때문에 주차공간이 줄어들어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가 늘어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등 생활안전이 위협받게 되자 지난 10월 쉼터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실무협의 등을 가진 국민권익위는 이날 오전 수원시 영통구청에서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 이진호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장, 윤진수 택시노동조합 경기수원시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수원시는 조속히 대체 부지를 확보해 쉼터를 이전하고 인근 주택가의 주 진출입로에 반사경 설치와 수목 정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시야 확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택시노동조합 수원시지부는 수원시가 마련한 대체부지로 쉼터를 이전하는데 동의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에 중앙차선을 설치해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키로 했다.

김인수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공영주차장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이 해소되고 교통안전이 확보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기관 간 소통하고 협업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관계기관들은 오늘 합의내용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현장조정회의 마친 김인수 권익위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앞줄 오른쪽 세번째)이 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청에서 '광교신도시 공영주차장 내 택시 쉼터 이전을 위한 집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마친 후 지역 주민, 관계자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16.12.6 [국민권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끝)

25. 김포한강신도시 나래지하차도 소음저감 대책 수립 요구

민원번호 : 2AA-1605-161269 (도시수자원민원과)

<민원개요>

한강신도시내 공동주택과 인접한 나래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없는 소음피해를 겪고 있으니 방음터널 설치 등 종합적인 소음 저감대책 수립 요구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김○○ 외 857세대
-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시장, 김포경찰서장

2) 민원 주요내용

- 나래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에 대한 종합적인 소음저감대책 수립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 등 교통소음 저감대책 수립 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나래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에 대한 종합적인 소음저감대책 수립 요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하차도 주변의 지역여건과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음저감 대책 소요예산 범위내에서 김포시와 협의하여 주거생활에 적합한 소음대책을 수립할 예정
- (김포시장) 방음벽은 저층세대의 조망, 환기, 채광에 많은 지장이 있고 저소음 포장재 시공은 도로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합리적인 소음저감대책 수립 필요

- (김포경찰서장) 나래지하차도의 통행현황 등을 검토하여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

2) 민원특성 :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관계기관 협의 등]

- '16. 6. 22. : 현장조사 (소음저감대책 수립 필요성 논의)
- '16. 8. 21. : 현장조사 (소음저감대책 수립 필요성 논의)
- '16. 8. 22. : 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 가능여부 의견조회
- '16. 9. 30. : 관계기관 출석조사 (방음터널 설치 소요예산 및 방음효과 논의)
- '16. 10. 26. : 지하차도 부분 방음터널 설치 확정
- '16. 10. 27. ~ 11. 25.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견조회
- '16. 11. 30. : 조정안 의견조회
- '16. 12. 6. : 상부이면도로 차량 속도 제어를 위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논의
- '16. 12. 7. : 조정안 확정

2) 갈등해결수단 : 합리적인 조정안 제시, 관계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래지하차도에 방음터널 설치, 이면도로에 저소음포장재 시공 및 방음림 식재
- (김포시장) 소음저감시설 설치 완료시 인수받아 유지·관리에 만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비용 부담
- (김포경찰서장) 신청인 및 김포시와 협의하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위치 선정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나래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정상적인 주거생활 어려움	• 소음저감대책 수립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2) 시사점

- 나래지하차도 인근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공동의 고민과 노력을 통해 성사되어 극심한 교통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26. 김포한강신도시 운유지하차도 소음저감 대책 수립 요구

민원번호 : 2AA-1606-447918 (도시수자원민원과)

<민원개요>

한강신도시내 공동주택과 인접한 운유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없는 소음피해를 겪고 있으니 방음터널 설치 등 종합적인 소음 저감대책 수립 요구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이○○ 외 1,473세대
-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시장

2) 민원 주요내용

- 운유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에 대한 종합적인 소음저감대책 수립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 등 교통소음 저감대책 수립 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운유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에 대한 종합적인 소음저감대책 수립 요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하차도 주변의 지역여건과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음저감 대책 소요예산 범위내에서 김포시와 협의하여 주거생활에 적합한 소음대책을 수립할 예정
- (김포시장) 방음벽은 저층세대의 조망, 환기, 채광에 많은 지장이 있고 저소음 포장재 시공은 도로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합리적인 소음저감대책 수립 필요

2) 민원특성 :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관계기관 협의 등]

- '16. 8. 21. : 현장조사 (소음저감대책 수립 필요성 논의)
- '16. 8. 22. : 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 가능여부 의견조회
- '16. 9. 30. : 관계기관 출석조사 (방음터널 설치 소요예산 및 방음효과 논의)
- '16. 10. 26. : 지하차도 부분 방음터널 설치 확정
- '16. 10. 27. ~ 11. 25.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견조회
- '16. 11. 30. : 조정안 의견조회
- '16. 12. 7. : 조정안 확정

2) 갈등해결수단 : 합리적인 조정안 제시, 관계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한국토지주택공사) 운유지하차도에 방음터널 설치, 이면도로에 저소음포장재 시공 및 공공공지에 방음림 식재
- (김포시장) 소음저감시설 설치 완료시 인수받아 유지·관리에 만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비용 부담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운유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정상적인 주거생활 어려움	• 소음저감대책 수립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2) 시사점

- 운유지하차도 인근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공동의 고민과 노력을 통해 성사되어 극심한 교통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27. 김포한강신도시 장기지하차도 소음저감 대책 수립 요구

민원번호 : 2BA-1609-284402 (도시수자원민원과)

<민원개요>

한강신도시내 공동주택과 인접한 장기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없는 소음피해를 겪고 있으니 방음터널 설치 등 종합적인 소음 저감대책 수립 요구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홍○○ 외 812세대
-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시장, 김포경찰서장

2) 민원 주요내용

- 장기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에 대한 종합적인 소음저감대책 수립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 등 교통소음 저감대책 수립 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장기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에 대한 종합적인 소음저감대책 수립 요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하차도 주변의 지역여건과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음저감 대책 소요예산 범위내에서 김포시와 협의하여 주거생활에 적합한 소음대책 수립 예정
- (김포시장) 방음벽은 저층세대의 조망, 환기, 채광에 많은 지장이 있고 저소음 포장재 시공은 도로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합리적인 소음저감대책 수립 필요
- (김포경찰서장) 장기지하차도의 통행현황 등을 검토하여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

2) 민원특성 :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관계기관 협의 등]

- '16. 9. 30. : 관계기관 출석조사 (방음터널 설치 소요예산 및 방음효과 논의)
- '16. 10. 26. : 지하차도 부분 방음터널 설치 확정
- '16. 10. 27. ~ 11. 25.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견조회
- '16. 11. 30. : 조정안 의견조회
- '16. 12. 6. : 상부이면도로 차량 속도 제어를 위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논의
- '16. 12. 7. : 조정안 확정

2) 갈등해결수단 : 합리적인 조정안 제시, 관계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한국토지주택공사) 장기지하차도에 방음터널 설치, 이면도로에 저소음포장재 시공 및 완충녹지에 방음림 식재
- (김포시장) 소음저감시설 설치 완료시 인수받아 유지·관리에 만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비용 부담
- (김포경찰서장) 신청인 및 김포시와 협의하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위치 선정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장기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정상적인 주거생활 어려움	• 소음저감대책 수립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2) 시사점

- 장기지하차도 인근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공동의 고민과 노력을 통해 성사되어 극심한 교통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한강신도시 지하차도 3개소에 소음저감대책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나래.운유.장기 지하차도 현장조사 및 조정회의
소음저감시설 내년 7월까지 시공 완료 예정

신정아 기자 sja@city21.co.kr



김포한강신도시 지하차도 소음저감대책 추진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주관 조정회의가 지난 22일 LH 김포사업단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유영록 시장, 최재천 김포경찰서장, 조명현 LH 인천지역본부장이 참석했으며, 장기지하차도를 직접 방문해 소음 실태를 직접 체감하고, 지하차도 방음터널 시공, 저소음포장, 방음림 식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관계기관별 소음저감대책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서를 작성, 빠른 시일내 소음저감대책을 시행해 입주민 불편을 해소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김포한강신도시 입주 후 지하차도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운유, 장기, 나래지하차도 인근 3개단지 아파트 입주민의 고충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소음저감시설은 2017년 7월 이전 시공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영록 시장은 “어려운 민원 해소를 위해 직접 방문하고 조정안을 이끌어준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LH에 조속한 시공으로 입주민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량 소음 고통' 김포신도시 지하차도 3곳에 덮개

'차량 소음 고통' 김포신도시 지하차도 3곳에 덮개
(김포=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차량 소음 민원이 제기된 김포 한강신도시 운유·나래·장기 지하차도 3곳에 방음덮개가 설치되는 등 소음저감 대책이 추진된다.



김포신도시 지하차도 3곳 소음대책 합의한 시·권익위·LH·주민 대표들

김포시에 따르면 운유 지하차도의 최근 소음은 기준(낮 65dB·밤 55dB)을 초과해 낮과 밤에 각각 66.7dB과 59dB로 측정됐다.

장기 지하차도 역시 주간과 야간 각각 71.7dB과 70.3dB로, 나래 지하차도는 67.dB과 65dB로 각각 나왔다.

이들 지하차도 인근 3천142가구 주민들은 낮에는 말할 것도 없고 밤에도 창문을 열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소음 고통을 겪고 있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 김포시, 김포경찰, LH는 최근 현장을 방문해 지하차도 일부 구간에 방음 덮개를 씌우고, 상부 도로를 저소음 포장재로 다시 포장하고,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도로와 아파트 단지 사이에는 나무를 심어 소음을 줄이기로 했다.

김포시는 23일 "한강신도시 개발 주체인 LH가 소음저감 공사를 내년 7월 말 이전 완료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ngsun@yna.co.kr
(끝)

28. 광교신도시 내 ○○아파트 부출입구 개설 요구

민원번호 : 2AA-1604-376830 (도시수자원민원과)

<민원개요>

광교신도시 내 ○○A6블록 아파트의 주출입구가 왕복1차선의 교량 1개소 밖에 없어 인접 초등학교 어린이의 통학 안전 위험 및 출퇴근시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 광교로 쪽에 부출입구 개설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시행자 비용부담으로 부출입구 개설하는 내용으로 조정·중재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아파트 입주예정자 350명
- 피신청인 : 경기도 수원시장
- 관련기관 : (주)○○건설산업, 수원남부경찰서장

2) 민원주요내용

- 광교신도시 내 ○○A6블록 아파트의 부출입구 개설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부출입구 개설 비용 분담 문제
- 부출입구 개설의 필요성 및 타당성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통학안전 및 출퇴근시 교통안전을 위해 부출입구 개설 필요
- (경기도 수원시장) 광교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서가 제출되면 관련부서 협의 및 수원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처리 예정
- (주)○○건설산업) 부출입구 개설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구체적인 사항 등을 세밀하게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

- (수원남부경찰서장) 부출입구 개설시 우진입·우진출만 허용하고, 진출입 구간 50m에 가감차로를 설치하여 주도로 차량과의 상충을 최소화할 필요

2) 민원특성 : 안전 민원, 도시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부출입구 비용 부담 등 조정·중재안 도출
- 2016. 5.- 2016. 6.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 회의 개최(3회)
- 2016. 6. 위원회 조정(안) 마련 및 협의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경기도 수원시장)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절차 진행
- (주)○○건설산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제안, 비용 부담하여 부출입구 개설
- (수원남부경찰서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협의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인접 초등학교 어린이의 통학 안전 위험 및 출퇴근시 교통 혼잡 예상	• 인접 초등학교 어린이의 통학 안전 위험 및 출퇴근시 교통 혼잡 예방

2) 시사점

- 인접 초등학교 어린이의 통학 안전 위험 및 출퇴근시 교통 혼잡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데 기여

29. 대구 금포지구 하수처리장 무상귀속 요구

민원번호 : 2BA-1609-240412 (도시수자원민원과)

<민원개요>

신청인이 비용 부담하여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건립한 하수처리장을 대구광역시가 도시계획시설(하수도)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거부하고 있어 사업 준공이 지연되고 신청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사업지구 하수처리구역 반영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 하수처리장 관리주체 정하도록 조정·중재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이○○ 외 579명
- 피신청인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2) 민원주요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건립한 하수처리장 관리주체 결정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하수처리장의 관리주체 결정 문제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을 위한 조속한 하수처리장 관리주체 결정 필요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시 공동처리구역으로 설정하여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한 사항이나, 신청인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하수처리장이 하수도법, 하수도시설기준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할 경우 기본계획 변경을 검토할 예정
- (달성군수) 이 민원 사업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추진된 사업

으로 향후 청산 등의 절차를 거쳐 조합이 해산되므로 하수처리장을 신청인이 직접 운영할 수 없고, 더욱이 하수처리장은 공공시설이므로 대구광역시에게 무상귀속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2) 민원특성 : 규제완화 민원, 도시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해 군사시설 이전·대체시설 제공 등 조정·중재안 도출
- 2016. 9.- 2016. 11.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 회의 개최(3회)
- 2016. 10. 위원회 조정(안) 마련 및 협의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대구광역시) 사업지구 하수처리구역 반영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 (달성군수) 환지계획 변경인가 및 사업 준공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 지연 • 사유재산권 활용 불가	• 차질없는 사업 준공 가능 • 공공시설 원활한 운영을 통한 사유 재산 피해 최소화

2) 시사점

-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 지연에 따른 사유재산권 활용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

금포지구 하수처리장 무상귀속 요구 현장조정회의



(서울=연합뉴스) 박창수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앞줄 왼쪽 세번째)이 29일 오전 대구 달성군청에서 열린 '금포지구 하수처리장 무상귀속 요구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마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6.11.29 [국민권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끝)

권익위, 대구 금포지구 무상귀속 민원 중재



국민권익위원회 박창수 상임위원(앞줄 왼쪽 세 번째)이 29일 오전 달성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금포지구 하수처리장 무상귀속 요구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마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9일 오전 달성군청 상황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대구 금포지구 하수처리장의 대구시 무상귀속을 요구하는 금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원 580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중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포 토지구획정리 사업 조합은 최근 금포지구 내 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사업 준공 후 조합 청산 등에 대비해 해당 시설을 대구시가 인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해당 하수처리장이 조합이 설치한 시설이고 지난 2009년 변경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도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돼 인수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조합측은 금포 하수처리장이 공공시설로서 공공기관이 관리해야 하며 사업 준공 후 조합이 청산되면 관리할 주체마저 없어진다면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무상귀속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9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통해 금포지구 내 하수처리장의 공공성을 감안,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계기관 간 공감대를 이끌어 내어 대구시 녹색환경국장, 달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게 됐다.

조정 합의안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는 금포지구를 하수처리구역으로 반영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 변경 승인 신청하고 승인이 이루어지면 금포지구 내 하수처리장을 관리·운영하기로 했다.

달성군은 대구광역시의 금포지구 내 하수처리장에 대한 관리·운영 결정에 따라 사업 준공 등의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고 신청인은 하수처리장의 인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물 보완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조정 합의로 민·관 협업을 통해 자칫 장기화될 수 있는 사업 준공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재산권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오늘 합의된 사항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피신청기관·신청인의 책임감 있는 노력을 당부했다.

박희송 기자 heesking@daum.net

30. 아산 신리초 이전부지 통학로 안전대책 요구

민원번호 : 2BA-1511-180057 외 6 (도시수자원민원과)

<민원개요>

신청인들이 입주할 아산 ○○아파트에서 2017년 이전 개교할 신리초등학교까지 통학하기 위해서는 대로를 횡단해야하고, 주변 빈집들로 통학로 일대가 우범지역이 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도록 조정·중재

*집단 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아산 ○○아파트 입주준비위원회 회장 장○○ 외 860명
- 피신청인 : 아산시장, 아산경찰서장,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2) 민원주요내용

- 아산 신리초 이전부지 통학로 안전대책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보조간선도로 차량 속도 시속 30km 제한 가능 여부
- 기타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 설치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 수립 필요
- (아산시) 예산 문제로 보행 육교 설치는 어려우며, 관계기관 협의 결과 보조간선도로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 고유의 제한속도를 유지토록 하고 있음

- (아산경찰서) 관련 지침상 무단횡단 방지시설이 설치된 보조간선도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로 고유의 제한속도를 유지토록 하고 있음
- (아산교육지원청) 공동주택 시행사 협의 결과 녹지대가 형성된 통학로 구간 안전펜스 설치 불가

2) 민원특성 : 집단민원, 어린이 안전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민원해결 방안 모색
- 현장조사(3회 : '16. 1. 14, 2. 12, 2. 25.)
- 인근 고속도로 IC 미개통에 따라 보조간선도로라 하더라도 시속 30km 이하로 차량속도를 제한하도록 협의하고 아산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안 마련

2) 갈등해결수단 : 합리적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아산시, 아산경찰서) 어린이 보호구역 30km/h 속도제한, 4방향 동시 신호 운영, 협프식 교차로·방법 CCTV 설치, 과속단속카메라 위치 조정, 실무 협의체 구성·운영 등
- (아산교육지원청) 신청인 아파트 시행사가 약속한 통학로 안전펜스 설치 여부 확인 및 아파트 동편 도로 경계 펜스 설치에 대해 시행사와 지속 협의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초등학교 통학로상 교차로 횡단 및 빈집 주변 통행 위험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 마련

2) 시사점

- 신청인들이 통학로 안전대책으로 보행 육교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안전대책들에 대해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중재에 참여
- 교차로 인근 고속도로 IC가 미개통된 점에 착안하여 차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함으로써 합의 도출

권익위, 아산 신리초교 통학로 집단 민원 중재

시속 30 km 제한...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 관계기관과 합의



(권익위 제공) © News1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신리초교 통학로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아산시 모종동 소재 캐슬어울림 아파트 입주예정자 861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중재했다고 밝혔다.

2017년 상반기 준공인 캐슬어울림 1, 2블럭에 거주할 초등학생들은 아파트 인근으로 이전해 개교하는 신리초교에 배정될 예정으로, 통학을 위해서는 4~6차선의 사거리를 횡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캐슬어울림 입주예정자들은 교차로를 횡단해야 하는 아이들의 사고위험이 크다고 보고 아산시에 보행 육교 설치를 요구했으나 아산시는 예산 문제로 육교 설치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캐슬어울림 입주예정자 861명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신리초교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수차례 실무협의를와 현장조사를 거친 권익위는 아산시 부시장,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조정 합의안에 따르면 아산시는 차량의 과속 방지를 위해 통학로 상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의 차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동시에 횡단보도의 높이를 인도와 동일하게 높이고 방법용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아산경찰서는 등하교 시간대 순찰 등으로 통학로 주변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대각선 횡단보도에 맞춰 교차로 교통신호를 운영기로 했다. 아산교육지원청도 아파트 시행사가 약속한 통학로 안전펜스가 제대로 설치되는지 확인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로 상황에 맞는交通安全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아산신리초 통학로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

박주환 기자 bumpark31@naver.com



▲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리초 이전부지 통학로 안전대책 요구 민원에 대한 현장조정회의를 가졌다.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오후 충남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신리초 이전부지 통학로 안전대책 요구 민원에 대한 현장조정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박창수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해 김영범 아산시 부시장, 김준표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노형섭 아산경찰서 교통경비과장, 민원 신청인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요구 민원과 관련해 현장 확인과 협의를 위해 열리게 됐다.

아산시에 따르면 장현기 모종 캐슬어울림 입주준비위원회 회장 외 860명이 지난 2015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당초 학교부지 위치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현 예정부지인 단지 밖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다.

이날 회의에서 통학로의 차량속도 제한, 험프식 교차로, 방범용 CCTV, 안전펜스 등을 설치할 것을 약속했다.

아산경찰서는 통학로 주변의 순찰강화 등으로 범죄예방에 노력하고, 아산교육지원청은 시행사가 약속한 통학로 안전펜스 설치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김영범 아산시 부시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31. 영주댐 수몰 평은리교 대체 교량 신설 요구

민원번호 : 2BA-1607-418057 (도시수자원민원과)

<민원개요>

영주댐 건설로 평은리교가 수몰될 경우 면사무소 방문 또는 경작을 위해 국도 5호선 내 성천교를 이용하여 하천을 횡단하여야 하나, 농기계 등 저속차량 이용시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부체도로는 굽이가 심해 이용이 불편함에 따라 대체 교량을 신설할 수 있도록 조정·중재

*집단 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평은리교대책위원회 위원장 장○○ 외 722명
- 피신청인 : 한국수자원공사, 영주시장

2) 민원주요내용

- 수몰되는 평은리교 대체교량 신설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교량 신설 사업비 확보
- 교량 신설이 댐 준공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평은리교가 수몰될 경우 국도5호선 내성천교를 이용하여 하천을 횡단하여야 하나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부체도로는 이용에 불편하므로 대체교량 신설 필요

-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 건설사업 잔여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교량 신설로 댐 건설 준공이 지연되어서는 안 됨
- (영주시장)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대체 교량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며 담수 전에 착공할 경우 사업비를 줄일 수 있음

2) 민원특성 : 수자원민원, 교통 불편 호소 집단 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민원해결 방안 모색
- 현장조사 5회/출석조사 1회('15. 11. 4. ~ '16. 8. 4.)
- '15. 9. 25. 접수된 1차 민원에 대해서는 담수 이후 공사 추진시 1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 확보 곤란으로 조정 결렬
- 농기계 등 전용, 준공 후 방류 시기 활용 非담수 조건에서 공사 시행으로 공사비를 절감토록 하여 확보 가능 사업비 80억원의 범위 내에서 교량을 신설기로 조정

2) 갈등해결수단 : 갈등의 중재자로서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로서 역할, 합리적인 중재안 제시

5. 조정 결과

- (한국수자원공사) 영주시를 대행하여 길이 500m, 폭 5.5m 규모의 대체 교량을 설계하고 시공하며, 50억원의 사업비 부담
- (영주시) 30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조속히 착수하며, 시험담수 제약사항 해결에 협조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저속차량 이용 면사무소 접근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증대 • 지역발전 저해	• 농기계, 오토바이, 도보 이용 면사무소 접근성 제고 및 교통사고 위험 감소 • 지역간 활발한 이동으로 면사무소 소재 이주대책 단지 활성화 도로

2) 시사점

- 주민과의 갈등으로 영주댐 준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었으나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 방안 강구, 조정합의 유도
- 갈등 중재자로서 1년 여 가까이 민원 협의를 주도하고, 세부적인 이견 부분에 대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안 제시

내외일보

영주시, 평은리교 재가설 상호협약 체결

주민 고충민원 해소, 끈질긴 설득으로 이뤄... 2018년까지 마무리

영주댐 건설로 수몰 위기에 처한 평은리교의 대체 교량이 건설된다.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중재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평은리교 재가설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한다.

지난 12일 평은면사무소에서 체결하게되는 이번 협약식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박창수 상임위원과 장욱현 영주시장,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장(권부현), 평은리교가설 대책위원회(위원장 장중덕) 회원과 주민들이 참석한다.

협약에 따르면, 길이 204m의 기존 평은리교를 총 길이 500m, 폭 5.5m의 새교량으로 조성될 새교량은 총사업비 80억으로 한국수자원공사 50억원, 영주시가 30억원의 사업비 부담을 약속하기로 하고 올해년말 까지 교량 설계를 완료해 2018년에 마무리하기

로 했다.

시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보상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착수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교량의 설계와 시공을 맡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평은리교 재가설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국책사업인 영주댐 담수도 차질이 없도록 상호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부터 평은리교 재가설을 위해 수차례 중재 회의를 개최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한편으로, 영주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또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교량 재가설을 설득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특히, 댐이 담수되면 사업비가 160억원이나 필요하지만, 비담수 상태로 공사를 하면 80억원의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음을 들어 지속적인 설득으로 마침내 지난

달 국토교통부로부터 비담수 상태에서 교량을 가설하는 것을 승인받았다.

지금까지 차량으로만 우회해 평은면사무소 방문이 가능했던 주민들은 평은리교 재가설로 농기계나, 이륜차, 자전거 등을 이용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됐으며, 영주시도 영주댐 주변 개발의 중심축을 담당할 수 있는 교량이 확보돼 댐 주변 지역 개발과 관광 산업화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한국수자원공사도 평은리교 재가설 문제로 지연된 시험담수가 가능해 영주댐 건설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할 수 있게 됐으며, 사업비 50억원 부담과 교량 시공을 담당하게 돼 지역과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역 친화적기업 이미지를 남기게 됐다.

영주/정승초 기자
seungchoj@naewoeilbo.com

‘수몰위기’ 영주 평은리교 새로 짓는다

市, 수자원공사와 재가설 협약
50억원 투입 길이 500m 조성

비 담수 상태 공사로 80억 절감
지역주민 오랜 숙원사업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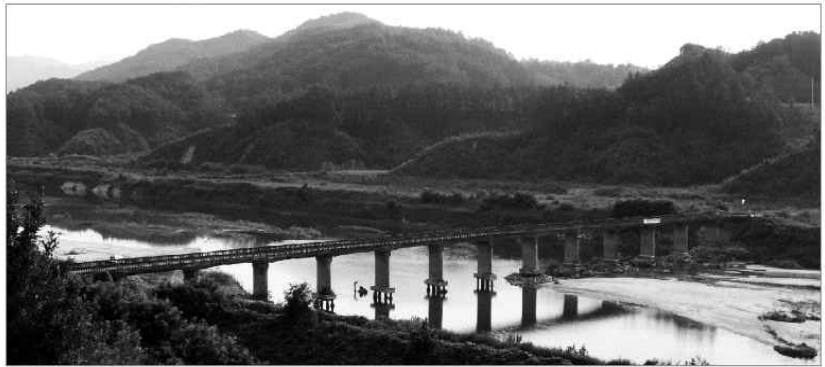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교가 수몰위기에 처했으나 재가설 되면서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됐다.

영주시는 12일 평은면사무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중재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평은리교 재가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박창수 상임위원과 장욱현 영주시장,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장 은리교가설 대책위원회 원과 주민들이 참석한다.

협약에 따르면 기존 평은리교(길이 204m)를 대신해 길이 500m, 총 폭 5.5m로 조성될 새 교량은 총사업비 80억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 50억원, 영주시 30억원의 사업비 부담을 약속하고, 올해까지 교량 설계를 완료해 2018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시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보상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착수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교량의 설계와 시공을 맡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평은리교 재설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국책사업인 영주댐 담수도 차질이 없도록 상



수몰위기에 몰렸던 영주 평은면 평은리교.

호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평은리교 재가설을 위해 수차례 중재 회의를 갖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정했으며 장욱현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교량 재가설을 설득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특히 댐이 담수되면 사업비가 160억원이나 필요하지만, 비 담수 상태로 공사를 하면 80억원의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마침내 지난달 국토교통부로부터 비 담수 상태에서 교량을 가설하는 것을 승인받았다. 지금까지 차량으로만 우회해 평은면사무소 방문이 가능했던 주민들은 평은리교 재가설로 농기계나, 이륜차, 자전거 등을 이용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도 영주댐 주변 개발의 중심축을

담당할 수 있는 교량이 확보돼 댐주변 지역 개발과 관광 산업화에 탄력을 받게 됐다.

수자원공사도 평은리교 재가설 문제로 지연된 시험담수가 가능해 영주댐 건설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할 수 있게 됐으며, 사업비 50억원 부담과 교량 시공을 담당하게 돼 지역과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역 친화적 기업 이미지를 남기게 됐다.

이에 대해 장욱현 평은리교 대책위원장은 “평은리교는 조상 때부터 이어 온 교량으로 우리 후손들도 계속 이행해야 할 시설이며 장래에 평은면 발전의 중심축으로 미래에 활력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량 재가설은 주민들의 도움과 시장님의 의지가 없었으면 힘들었을 것이다. 도움을 주신 시장, 의원, 관련자님들에게 감사하며 숙원사업이 이뤄져 기쁘다”고 말했다.

이희원기자 lhwhidomin.com

영주댐으로 수몰 위기 다리, 대체교량 건설

(대구·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경북 영주댐 건설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교를 대체할 교량이 건설돼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영주시는 11일 한국수자원공사와 평은리교 대체 교량 건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평은면사무소 건너편에 사는 주민들은 영주댐 건설로 평은리교(204m)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인근의 국도 5호선을 이용해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주민들은 "왕복 4차선인 우회도로는 차량들의 속도가 빨라 도보나 농기계, 이륜차, 자전거를 이용할 때 교통사고 등 위험이 높다"며 대체교량 건설을 영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준공 연기와 담수 지연에 따라 80억~9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난색을 표하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갈등 조정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의 6차례의 걸친 중재 끝에 지난 4일 기존 평은리교에서 하류 방향으로 200여m 떨어진 곳에 길이 500m, 폭 5.5m, 사업비 80억원 규모의 대체 교량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와 평은리교 가설 대책위원회 등 지역 주민들은 12일 평은면사무소에서 재가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새 교량 사업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50억원, 영주시가 30억원을 각각 부담하기로 했으며 올해 설계를 완료한 뒤 2018년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차량으로만 우회해 평은면사무소 방문이 가능했던 주민들이 평은리교 재가설로 농기계, 이륜차, 자전거 등을 이용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daegurain@

영주댐 수몰예정 평은리교 2018년 재가설



【영주=뉴시스】김진호 기자 = 영주댐 건설로 수몰 위기에 처한 경북 영주시 평은면의 교량이 대체 건설된다.

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중재에 따라 12일 평은면사무소에서 K-water(한국수자원공사)와 평은리교 재가설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박창수 상임위원과 장욱현 영주시장, K-water 권부현 경북지역본부장, 평은리교가설 대책위원회 장중덕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총사업비 80억원(K-water 50억원, 영주시 30억원 부담)을 들여 기존 평은리교(길이 204m)를 대체할 길이 500m, 폭 5.5m의 새 교량을 건설한다.

올해말까지 교량 설계를 완료한 뒤 2018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영주시는 그동안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교량 재가설을 설득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작년부터 평은리교 재가설을 위한 중재회의를 수차례 개최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정했다.

평은리교 재가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K-water는 그동안 지연됐던 영주댐 건설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할 수 있게 됐다.

kjh9326@newsis.com

수몰 영주 평은리교 80억 들여 새로 가설

경북 영주시 영주댐 건설로 수몰되는 평은리교의 대체 교량이 지어진다.

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와 영주시,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 평은리교 가설대책위원회는 12일 영주시 평은면사무소에서 평은리교 재가설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중재에 따른 것으로 길이 500m, 폭 5.5m로 재가설하는 교량은 총 사업비 80억원 중 50억원은 한국수자원공사, 30억원은 영주시가 각각 부담한다. 올해 설계를 마치고 2018년 완공 계획이다.

시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보상 등 행정절차를, 한국수자원공사는 교량의 설계와 시공을 맡게 되며 시험담수 중인 영주댐은 올 연말 비운 뒤 교량가설에 맞춰 본 담수 시기를 조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평은면 주민들의 교량건설 요청 민원에 따라 지난해부터 재가설을 위해 중재와 의견을 조정했으며, 시는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재가설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이용호 기자

32. 운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 개선 요구

민원번호 : 2BA-1601-019753(도시수자원민원과)

<민원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파주운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훼손한 주변환경 개선을 요구

※ 아파트 경계 펜스 설치, 아파트 진출로 급커브 완화, 경비초소 리모델링, 공터 조경, 배수문제 해결 등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파주 ○○아파트 입주자주민대표회의 회장 등 4,000명
-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관련기관 : 경기도 파주시장

2) 민원주요내용

- 파주운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훼손된 주변환경 개선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시설물(경계 펜스 등)의 설치 및 보수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훼손된 주변 환경 개선
-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훼손된 기존도로를 보수하고, 공원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시설물(경계 펜스)을 아파트 부지 내에 시공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움

- (파주시) 피신청인과 주민들간 주변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합의안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2) 민원특성 : 안전 민원, 도시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시설물의 설치·보수 등 조정·중재안 도출
- 2016. 3. - 2016. 7.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 회의 개최(4회)
- 2016. 8. 위원회 조정(안) 마련 및 협의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계펜스 및 방음벽 철거구간에 수목울타리 또는 경계펜스 등을 설치하고, 후문 진출로 급커브 완화, 경비초소 리모델링, 정문 앞 공터 조정, 초등학교 출입구 안전펜스 설치 등의 주변환경 개선을 추진
- (경기도 파주시장) 피신청인의 수목울타리 설치 등 주변환경 개선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사후관리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파주운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주변환경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장기간 갈등	파주운정신도시 사업지역의 환경개선으로 지역 주민의 불편과 애로 해결

2) 시사점

-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존 주민들의 공사피해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려

는 관계기관의 의지가 잘 정리되어 기존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소외감 해소 및 지역화합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계기 마련

권익위, 파주운정신도시 주변 환경개선 현장조정

권익위, 파주운정신도시 주변 환경개선 현장조정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6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파주본부 회의실에서 운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훼손된 주변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중재, 타협점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권익위, 파주서 민원 현장조정회의 [권익위 제공=연합뉴스]

운정 산내마을 8단지 주민들은 LH가 2003년부터 파주운정신도시 조성공사를 해 오면서 일시적으로 아파트를 둘러싼 방음벽과 펜스 등 시설물을 상당 부분 철거했으나 아직까지 복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 LH가 철거 후 재시공한 아파트 진·출입 도로가 급커브로 조성돼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환경개선을 수차례 요구해 왔지만 수용되지 않자 올해 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를와 현장조사를 거쳐 이날 성영훈 권익위 위원장 주재로 주민들과 송유면 파주시 부시장, 박수홍 LH 도시환경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끌어냈다.

LH는 경계펜스와 방음벽을 철거한 구간에 수목 울타리나 경계펜스 설치, 아파트 진출로 급커브 완화, 경비초소 리모델링, 정문 공터 조성, 초등학교 출입구 안전펜스 설치 등 주변 환경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LH의 수목 울타리 설치 등 주변 환경 개선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사후관리를 맡기로 했다.

nsh@yna.co.kr
(끝)

국민권익위원회, 파주운정 산내마을 환경개선 민원 현장조정회의 개최



【서울=뉴스시스】조수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26일 오후 경기 파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대회의실에서 파주운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공사피해 해결에 관한 민원을 중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2016.08.26.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 02-721-7470)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파주운정 산내마을 환경개선 민원 현장조정회의



【서울=뉴스시스】조수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26일 오후 경기 파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대회의실에서 파주운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공사피해 해결에 관한 민원을 중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민원인,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6.08.26.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 02-721-7470)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33. 좌회전 허용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민원번호 : 2AA-1604-003799(교통도로민원과)

<민원개요>

경기 화성시 향남읍 갈천웃말길 주변 '갈천~가수' 도로확장공사 설계에는 마을과 공장단지로 진입하는 좌회전이 단절되어 대형컨테이너 등이 진입할 수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으니 좌회전 허용과 횡단보도 등을 설치 하도록 조정·중재

*기업 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주)○○산업 대표이사 배○○
- 피신청인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관련기관 :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2) 민원주요내용

- 공장단지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좌회전 허용과 횡단보도 설치

2. 주요 쟁점사항

- 이 민원 사업(국내 생산품 해외)의 시급성
- 차량 진출입 가능성 및 교통사고 예방시설 설치 필요성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국내 생산품의 해외 수출을 위해 차량 진출입이 반드시 필요
- (서울국토청) 기존 교차로에서 약800m 이격된 교차로에서 유턴하도록 설계한 것
이므로 이를 변경할 경우 총사업비 반영 등에 어려움 있음
- (도로교통공단)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이 필요

2) 민원특성 : 공장단지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도로설계 변경 필요, 교통도로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16. 4. 1. 집단 고충민원 접수(마을주민 576명)
- '16. 4. 6. ~ 설명자료 요청(6회)
 - 서울지방국토청2, 도로교통공단1, 화성서부경찰서1, 경기도1, 화성시1
- '16. 4. 27.~ 현지조사(3회) 및 관계기관 등과 20여차례 업무 협의
 - ※ '16. 7. 8 현장조정 조정안 확정
- 도로교통공단에 기술분석 의뢰하여 3지교차로를 통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조정안을 도출하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해결
 - 노동자 및 주민들의 안전 위해 3지교차로 형성하고 교통신호기와 횡단보도(신호등)
설치
 - 공장단지에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좌회전 대기차선 및 신호교차로 설치
 - 소요예산(약23억)은 총사업비 반영을 위해 기재부와 적극 협의

2) 갈등해결수단 : 도로교통공단의 기술 분석을 통해 3지교차로 설치(안) 제시

5. 조정 결과

-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교차로를 형성하고 교통신호기와 횡단보도(신호등) 설치
및 정류장 부지 확보
- 마을과 공장단지에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좌회전대기 차선과 신호교차로 설치
- 소요예산(약23억)은 총사업비 반영을 위해 기재부와 적극 협의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 관계기관은 원론적 논리를 주장하며 설계변경에 부정적이었으나, 20여 차례의 관계

기관 협의와 교통안전 기술분석을 통해, 주민 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있는 점, 좌회전이 안 될 경우 기업경영이 어려워 공장을 해외로 이전을 검토해야 하는 점(기업 이전비는 약300억 소요) 등을 고려, 3지교차로를 도입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에 기여

- 공장단지에서 진출입이 편리 해 세계 25개국으로 적기 수출 가능
- 공장노동자와 주민의 보행자도로 및 신호등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

34. 재해 방지를 위한 철도교 및 하천 교량 확장

민원번호 : 2BA-1601-222532 (교통도로민원과)

<민원개요>

경기 연천군 연천읍 상리마을 주변에 설치된 철도교(거림천교)는 1914년에 6m폭으로 설치되었으나, 102여년이 지나면서 상류 하폭이 18m로 넓어져 집중 호우 시 마을이 침수되는 피해가 있으니 철도교와 하천 교량을 확장 해 달라.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권○○ 외 664명
- 피신청인1 : 한국철도시설공단
- 피신청인2 : 경기도 연천군수
- 관련기관 : 한국철도공사

2) 민원주요내용

- 상습적인 재해 방지를 위해 철도교 및 하천 교량을 동시에 확장 필요

2. 주요 쟁점사항

- 철도교는 1914년에 6m폭으로 설치되었으나 102년이 지나면서 하류폭이 18m로 넓어져 집중 호우 시 마을이 상습적으로 침수되므로 재해 안전시설 필요
- 철도교 확장 시 철도교와 연결된 소하천 교량을 동시에 확장 필요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상습적인 재해 방지를 위해 철도교와 하천 교량을 동시 확장 필요
- (한국철도시설공단) 마을과 농지의 침수 예방을 위해 추가로 확장될 철도교 폭 만큼, 연천군에서 하천과 연결된 교량을 동시에 확장할 경우 사업비 반영을 고려할 수 있음
- (연천군) 마을과 농지의 침수 예방을 위해 추가로 확장될 철도교 폭 만큼, 연천군에서 하천과 연결된 교량을 동시에 확장할 경우 사업비 반영을 고려할 수 있음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연천군이 철도교와 하천 교량 확장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철도교 확장 공사를 위한 경원선(동두천~백마고지역) 운영에 협조를 고려할 수 있음

2) 민원특성 : 철도교량이 협소하여 집중 호우 시 하천이 범람하여 마을이 침수되므로 다수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민원, 교통도로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16. 1. 20. 집단 고충민원 접수 (665명, 마을대표 : 권○○)
- '16. 1. 22. 설명자료 요청 및 관계기관 협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본부, 수도권본부), 연천군, 국토교통부
- '16. 2. 29.~ 고충민원 현지조사 및 피신청기관과 약 20차례 협의를 통해 위원회 조정(안)에 수용 의사 확인

2) 갈등해결수단 : 다수기관의 업무 구간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자는 조정(안) 제시

5. 조정 결과

- 1914년 설치된 경원선 철도교는 6m로 좁아 집중 호우 시 마을이 상습 침수되므로 18m이상으로 확장(철도공단, 20억)
- 예산절감 위해 경원선(동두천~백마고지역) 구간을 임시 운행중단 하고 대체 교통수단 마련(철도공사, 연천군 3억)
- 철도공사 : 동두천역~연천역 구간만 관광열차 운행(1일 22회)

- 연 천 군 : 연천역~백마고지역까지 무료셔틀버스 운행
- 철도교 확장 예산 확보 후 철도교와 하천 교량을 와초천 기본계획에 맞추어 동시 공사 시행(연천군)
- ※ 총 소요 비용 : 120억(국민안전처 60억, 연천군 60억)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 경기도 연천군 상리(와초리)마을 주변에 설치된 거림천교(철도교)는 1914년 6m폭으로 설치된 후 집중 호우 시 상류 좁은 철도교를 빠져 나가지 못한 물이 마을과 농지 등을 덮쳐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다수기관이 관련되어 민원해결이 곤란한 상황이었으나,
- 위원회의 효율적인 중재로 여러기관이 사업비를 분담하여 좁은 철도교는 물론 소하천에 설치된 교량을 동시에 확장함으로써 재해 원인을 원초적으로 개선하여 홍수 피해 등을 예방하는 계기 마련

35. 군산 마을 관통 철도노선 교량화 변경요구

민원번호 : 2BA-1603-169500(교통도로민원과)

<민원개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신촌마을을 관통하는 철도노선을 토공구간으로 설계하여 마을간 고립, 소음·분진, 침수 등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니, 토공구간을 교량화로 변경하여, 마을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 신촌마을주민 178명이 제기한 집단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조○○ 외 177명
- 피신청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 관련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군산시장

2) 민원주요내용

- 현재 성토구간으로 설계된 신촌마을 관통 철도노선을 교량화로의 변경

2. 주요 쟁점사항

- 성토구간으로 설계된 철도노선의 교량화 변경의 적정성
- 인접 철도노선과의 형평성, 교량화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등 추가예산 반영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군장국가산단 인입선철도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신촌마을을 관통하는 철도노선을 토공구간으로 설계하여 마을간 고립, 소음·분진, 침수피해 등의 발생이 우려되니, 토공구간을 교량화로 변경 요구
- (한국철도시설공단)신촌마을의 철도노선은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공법의 적정성, 시공성, 경제성, 환경성 등의 종합적 검토를 거쳐 토공구간으로 확정되어 용지보상이 완료 단계에 있고,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 교량화(일조권, 고립, 양분/분리 등) 요건에도 충족되지 않아 교량화 요구 수용은 곤란
- (국토교통부)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신촌마을 관통 철도노선의 교량화 변경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면 교량화 변경을 적극 검토·반영하겠음
- (전북 군산시)이 민원 철도사업으로 신촌마을 남측 42가구의 생활권이 단절되어 15가구의 고립이 초래 되었고, 마을 통과구간이 성토(9m이상)노선으로 설계되어 마을 환경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어 교량화 변경 또는 마을 이주대책이 필요

2) 민원특성 : 안전·환경관련 민원, 집단민원, 교통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철도공사로 인해 신촌마을이 양분되어 마을간 고립감,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 배수불량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점, 신촌마을은 이 민원 철도공사 이전부터 산업도로 및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피신청인을 이해·설득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해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 및 주민협의(5회), 관계기관 협의(10회)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한국철도시설공단)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의 철도노선 중 신촌마을을 관통하는 토공구간[대기(현)13km100~13km300, 약 150m, 이하 '이 민원 토공구간']에 대하여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교량화로의 변경을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이 민원 토공구간을 교량화로 변경하기 위한 추가 예산 확보·반영에 적극 협력
- (전북 군산시장)이 민원 토공구간을 교량화로 변경하기 위한 타당성(교량화 Check List)용역비를 확보하여 2016. 7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한국 철도시설공단에 통보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주민 안전·환경피해 불안감 증가 • 집단 공공갈등민원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 • 국책사업 시행 지연 등	• 주민 안전·환경 불안감 해소 •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집단(공공)갈등민원을 사전 예방 • 국책사업의 정상적 시행 토대 마련

2) 시사점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집단민원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이후 약 6개월 동안 10차례의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중재·합의안 도출을 통해 신촌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소와 국책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세계일보

군산 신촌마을 '도로단절 위기' 권익위 중재로 모면



도로공사로 두 동강난 전북 군산의 한 마을이 이번에는 철도공사로 인해 또다시 분리될 처지에 놓였으나 국민권익위 중재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군산시는 14일 신관동 신촌마을을 지나는 군장국가산단 진입 철도공사로 인해 마을이 양분되고, 침수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신촌마을은 전체 76가구에 178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지난 1994년 국도21호선 도로가 개설되면서 북측에 34가구, 남측에 42가구로 양분되고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에도 노출돼 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이 마을을 관통하는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공사가 또 추진되면서 도로 남측에 있는 42가구가 다시 둘로 쪼개져 서로 고립될 상황에 처해졌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에 따르면 이 마을 철도구간의 경우 지면에서 약 9.6m의 높이로 성토해 시공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북쪽 국도21호 자동차 전용도로와 남쪽 철도로 막혀 3개의 마을로 분리, 고립될 수밖에 없고 조망권 상실은 물론 열차 통행시 각종 분진, 소음과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주민들의 우려다.

36. 고양 다락골 생태통로 · 산책로 복원요구

민원번호 : 2BA-1601-210930(교통도로민원과)

<민원개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고양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원당~관산)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함)로 기존 산책로가 단절되어 지역주민들의 이용불편 및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니, 도로공사로 단절된 산책로를 복원해 달라

* 왕릉 · 다락골주민 108명이 제기한 집단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장○○ 외 107명
- 피신청인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관련기관 : 고양시장

2) 민원주요내용

- 도로공사로 단절된 왕릉~다락골 간의 산책로 복원

2. 주요 쟁점사항

- 사업시행 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과 산책로 복원의 필요성
- 산책로 복원에 사업비 증가로 총사업비 변경 등 추가예산 반영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고양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원당~관산) 건설공사로 왕릉골~다락골간 기존 산책로와 동물이동통로가 단절되어 주민들의 이용불편 및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니, 도로공사로 단절된 산책로와 동물이동통로를 복원을 요구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민원 공사 시행 전 실시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주민설명회('01.8.29), 주민공청회('02.5.21)에서 산책로 설치 요구가 없었고, 이 민원 공사의 설계도서에 우회도로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상태여서 추가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산책로 설치 곤란
- (고양시장)공사에 반영된 우회도로는 주민들이 약 1km를 돌아가는 불편이 있고, 생태통로도 친환경도로설계가 정립되기 이전의 설계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산책로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며, 향후 설치되는 산책로의 유지·관리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타당

2) 민원특성 : 안전·환경관련 민원, 집단민원, 도로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이 민원 도로공사가 환경영향평가 시행 후 10여년이 지난 시점에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점, 최초 설계시점의 왕릉·다락골 부락에 정주환경 및 자연생태계가 변화된 점, 설계에 반영된 우회도로가 주민이용에 불편이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피신청인을 이해·설득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해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 및 주민협의(5회), 관계기관 협의(10회)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민원 공사로 인해 양분(STA.6+600~STA.6+960)되는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왕릉·다락골 간의 원활한 이동통로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거쳐 이 민원 공사의 준공 시까지 산책로를 설치

- (고양시장)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설치되는 즉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시설물을 인수받아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주민 안전·환경피해 불안감 증가 • 집단 공공갈등민원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 • 공공사업 시행지연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피해발생 등	• 주민 안전·환경 불안감 해소 •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집단(공공)갈등민원을 사전 예방 • 공공사업의 정상적 시행 토대 마련

2) 시사점

- 약 6개월 동안 10차례의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중재·합의안 도출과 당사자들 간의 양보와 협업을 통해 고양 왕릉·다락골 주민들의 7년여에 걸쳐 요구해 온 숙원을 해소하고, 공공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계기 마련

권익위, ‘고양시 도로공사로 끊어진 산책로 복원’ 중재

도로공사로 인해 끊어졌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왕릉·다락골 산책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7년 만에 다시 연결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오늘(24일) 국도 대체 우회도로(원당~관산) 건설 공사현장에서 주민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양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산책로 복원을 위한 조정안을 확정했다.

권익위 중재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주민의 원활한 이동통로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거쳐 공사 준공 때까지 육교 형태의 산책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앞서 인근 주민들은 도로 건설 공사로 산책로가 끊겼다면 2009년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고양시 등에 산책로 복원 등을 요구해왔지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올해 초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안다영기자 (mauverine@kbs.co.kr)

37. 칠곡 공사로 단절된 마을 연결도로 설치요구

민원번호 : 2BA-1604-421537, 2BA-1605-250544(교통도로민원과)

<민원개요>

한국도로공사가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동호동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노선을 성토구간으로 설계하여 마을 양분화, 고립, 조망권 침해, 국도5호선 연결도로 단절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성토구간을 교량화로 변경하거나 마을과 국도5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를 설치해 달라

* 동호동마을주민 437명이 제기한 집단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조○○ 외 436명
- 피신청인 : 한국도로공사
- 관련기관 : 대구 북구청장, 경북 칠곡군수

2) 민원주요내용

- 도로공사로 단절된 대구 동호동~경북 칠곡군 동명면 간의 연결도로 설치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고속도로공사 시행으로 동호동마을의 피해 발생과 연결도로 설치의 필요성
- 연결도로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증가로 총사업비 변경 등 추가예산 반영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한국도로공사가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고속국도 제700호선)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하면서 동호동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노선을 성토구간으로 설계하여 마을 양분화, 고립, 조망권 침해, 국도5호선 연결도로 단절(도시계획도로 대로1-13호선 노선축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성토구간을 교량화 하거나, 마을과 국도5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를 설치할 요구
- (한국도로공사)신청인들의 요구에 따라 마을 앞 고성토(H=5.8~15.4m)구간을 교량화 (약 400m)로 변경 하거나, 국도5호선과의 연결도로를 설치할 경우 마을주민들이 우려하는 고립, 조망, 통행 등의 피해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공사비의 과다 소요(약 150억 원)로 총사업비 변경이 어려워 수용이 곤란
- (대구 북구청장, 경북 칠곡군수)이 민원 공사로 마을 고립이 심화되었고, 마을과 국도 5호선을 연결하도록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어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크므로 국도5호선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하는 것이 타당

2) 민원특성 : 안전·환경관련 민원, 집단민원, 도로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이 민원 고속도로공사로 인해 동호동마을이 양분되고, 고속도로의 성토구간으로 인해 동호동 마을의 일부 주택이 조망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이 민원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기존 마을과 국도5호선의 연결도로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 폐지되는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피신청인을 이해·설득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해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 및 주민협의(4회), 관계기관 협의(5회)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한국도로공사)이 민원 공사구간과 인접한 마을의 일부 가옥(4가구)이 조망권의

수인한도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이 민원 공사로 대구광역시·경상북도가 고시한 도시계획도로(대로1-13호선) 노선이 축소(L=8.12km, 경북 칠곡군~대구 동호동)된 점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들이 요구하는 연결도로(교량, 통로암거, 연결로,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변경 승인 시 이 민원 공사의 준공 일까지 국도5호선 연결도로를 설치

- (대구 북구청장, 경북 칠곡군수)한국도로공사가 연결도로 시설물(교량, 도로시설, 교통안전시설 등)을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관할구역에 시설물이 설치되는 즉시 시설물을 인수받아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

6. 조정 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주민 안전·환경피해 불안감 증가 • 집단 공공갈등민원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 • 공공사업 시행지연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피해발생 등	• 주민 안전·환경 불안감 해소 •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집단(공공)갈등민원을 사전 예방 • 공공사업의 정상적 시행 토대 마련

2) 시사점

- 약 5개월 동안 10차례의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중재·합의안 도출과 당사자들 간의 양보와 협업을 통해 대구 동호동마을 주민들의 5년여에 걸쳐 요구해 온 숙원을 해소하고, 공공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

고속도 공사탓에 끊어진 도로민원 권익위 현장조정

칠곡군 동명면·대구 동호동 주민 437명 집단민원 중재

2016. 09. 26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3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를 대상으로 칠곡군 동명면과 대구 북구 동호동 주민 등 437명이 제기한 민원을 중재했다.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은 한국도로공사가 마을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노선을 설계해 마을 양분화와 조망권의 피해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며, 고속도로와 마을을 연결하는 연결로 및 성토구간을 교량화로 변경하라는 내용으로 지난 4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추가사업비가 과다 소요돼 요구 사항의 반영이 불가하다는 뜻을 내놨다. 상황이 이렇자 권익위는 지난 23일 국도 5호선 공사현장에서 주민과 한국도로공사, 대구 북구청, 칠곡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날 조정회의를 통해 △한국도로공사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변경 승인 시 국도 5호선 연결도로를 설치 △북구청과 칠곡군은 시설물을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 △주민은 고속도로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등의 내용이 합의됐다.

2016년
고충민원 조정사례집

발행일 2016. 9.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
전 화 044 200 7313
팩 스 044 200 7928
